

제1장

국제스포츠규정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개정	2023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본 규정은 국제스포츠규정(FIA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이하 국제스포츠규정)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국내스포츠규정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국제스포츠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스포츠규정의 영문과 국문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1조 총칙

제1.1조 모터스포츠의 국제규정

1.1.1 국제자동차연맹(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이하 'FIA')은 안전과 스포츠의 공정성 원칙에 바탕을 둔 규정을 만들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자동차 경기와 자동차 이스포츠(Esports) 경기의 기록을 촉진하고 통제할 목적을 가지며, FIA 국제챔피언십과 FIA 국제 이스포츠(Esports) 챔피언십을 조직하는 유일한 국제경기기구다.

1.1.2 FIA는 이로부터 제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국제 항소재판소다. 1, 2, 3륜 차량에 관해서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Motocyclisme)이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1.3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FIA와 그 임원, 대리인, 직원, 디렉터 또는 오피셜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 결정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청구, 비용,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사기행위는 이에 제외된다.

제1.2조 국제스포츠규정

1.2.1 위의 권한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FIA는 이 국제스포츠 규정과, 그에 따른 모든 부칙을 포함하여 제정한다.

1.2.2 국제스포츠규정의 목적은 국제 모터스포츠를 규제,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1.2.3 이러한 목적은 경기 또는 참가자의 참가를 막거나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 FIA가 모터스포츠의 안전, 공정, 또는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다.

제1.3조 규정의 속지와 복종

- 1.3.1 경기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는,
 - 1.3.1.a FIA의 정관과 규정, 그리고 국내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1.3.1.b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 없이 복종할 책임을 진다.
- 1.3.2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든 그에 대해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떤 제조자든 FIA 챔피언십에서 일시 또는 영구 제명될 수 있다. FIA 및 ASN은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
- 1.3.3 차량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제1.4조 모터스포츠의 국내 총괄

- 1.4.1 하나의 ASN은 그 단체가 있는 나라의 권력 안에 있는 모든 영토에서 국제스포츠 규정을 집행하고 모터스포츠를 관할하는 유일한 국제적 스포츠 권한을 가지는 단체로 FIA에서 승인한다.
 - 1.4.1.a 국내총괄권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 :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FIA에 의하여 대한민국 ASN(National Sporting Authority)으로 승인되어, FIA의 정관 및 국제스포츠규정을 승인하고, 국내의 자동차경기를 관리, 총괄하는 유일한 권능단체다.
- 1.4.2 각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구속된다.

제1.5조 영토 내 스포츠 권한의 행사

국가 내 비자치 영토는 해당 국가에서 FIA를 대표하는 ASN이 행사하는 스포츠권한의 적용을 받는다.

제1.6조 스포츠 권한의 위임

각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 가운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나라안의 다른 클럽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FI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스포츠 권한의 위임 철회

ASN은 FIA에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 국내경기 규칙

각 ASN은 자체 국내경기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FIA에 제공해야 한다.

제2조 경기 - 총괄 조건

제2.1조 총괄 원칙

2.1.1 국제스포츠규정의 일반 적용

- 2.1.1.a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기는 국제스포츠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 2.1.1.b 그러나 클로즈드 경기 그리고 국가 내 기록 도전은 국내스포츠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국내스포츠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이 적용된다.

2.1.2 경기 조직

모든 나라에서는 다음 주체가 경기를 조직할 수 있다.

- 2.1.2.a ASN.
- 2.1.2.b 자동차 클럽, 또는 예외적으로 자격을 얻은 다른 스포츠 그룹. 단, 이들 클럽 또는 단체는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3 공식 문서

- 2.1.3.a 기록 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FIA 규정 안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 문서에는 특별규정, 참가 신청 서식

및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잠정과 최종 순위는 연습, 예선, 히트(적용 가능한 스포츠 규정에서 최종 순위 대신 특정 순위의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결승전에서 각각 발표되어야 한다.

2.1.3.b 이들 공식 문서에 포함된 조건 중 무엇이든 국제스포츠규정에 반할 경우에 그 조건은 무효가 된다.

2.1.4 경기에 관련된 모든 문서에 포함되는 문구

2.1.4.a 어떤 경기든 그에 관련된 모든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 그리고 참가 신청 서식은 다음 문구(부칙을 포함한 FIA 국제스포츠규정 및 ASN의 국내경기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1.4.b 국내스포츠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부칙을 포함한 FIA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 줄인다.

2.1.5 비공인 경기

2.1.5.a 강령 또는 해당 ASN 규칙에 따라 조직되지 않은 경기 또는 제안된 경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1.5.b 조직 구성이 허가된 이벤트에 이러한 경기가 포함된 경우, 조직 허가는 무효가 된다.

2.1.5.c 이러한 경기는 선수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ASN의 캘린더 및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등록된 시리즈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2.1.6 경기의 연기 또는 취소

2.1.6.a 경기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또는 안전을 이유로만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2.1.6.b 24시간 이상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에 참가비는 반환된다.

2.1.7 경기는 사무국 관련 업무 그리고/또는 검차 시작 시각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 종료는 아래 시한이 마치는 시점이다.

2.1.7.a 위 내용은 항의 또는 항소 기한 또는 모든 심리가 끝났을 때를 의미한다.

2.1.7.b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수행된 사무국 업무 및 경기 후 차량 검사가 끝났을 때.

2.1.7.b.i 항의 또는 항소의 기한 또는 심리 종료.

2.1.7.b.ii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후 검차가 끝났을 때.

2.1.8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일부에 속하는 어떤 경기도 FIA에게 공인을 받지 않으면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갈 수 없다.

2.1.9 국제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것과 같이 FIA의 포물러, 카테고리, 또는 그룹에게 개방된 어떤 국내 또는 국제경기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동차는 FIA 기술 규정의 모든 면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 규정에 대한 공식 해명은 FIA가 제공한다. ASN은 FIA에게 명시적으로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들 FIA 기술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 국제경기

2.2.1 국제 스피드 경기

국제 수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피드 경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2.2.1.a 국제 서킷 경기를 위해서, 관련 서킷은 참가 자격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적절한 등급의 FIA에서 발급한 공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영구 서킷은 FIA가 발급한 적절한 등급의 승인 확인서 또는 FIA가 발급한 동등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부칙 O 참고).

2.2.1.b 국제 랠리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랠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2.1.c 경기 참가자와 선수는 해당 국제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1.d 기록 도전을 제외한 경기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어야 한다.

2.2.2 국제 제한 스피드 경기

제한 속도 경기가 국제 자격 권리를 획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2.2.a 경기 코스(서킷 또는 도로)는 해당하는 주최 조직의 ASN(국가 스포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b 참가가 허용된 참가자 및 드라이버는 적절한 국제 라이선스 또는 동등한 국내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 2.2.2.c 대중교통이 허용된 공개 도로에서 진행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드라이버는 경기가 진행되는 국가에서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추가로 소지해야 한다.
- 2.2.2.d 경기 평균 속도는 최대 50km/h이고, 경기는 제3.4.2조를 준수하여 일반 교통이 허가된 공공 도로에서 개최된다.
- 2.2.2.e 경기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되어야 한다.
- 2.2.3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은 FIA의 재량이며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의 ASN을 통해서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FIA는 그 이유를 밝힌다.
- 2.2.4 국제경기만이 국제챔피언십(컵, 챌린지, 그리고 트로피) 또는 시리즈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2.2.5 FIA의 이름을 보유하는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국제경기는 FIA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
- 2.2.6 모든 국제경기에 대해서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정립된 국제규정과 함께 ASN의 규정 및 이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그 나라 안에서 적용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
- 2.2.7 선수, 팀, 또는 다른 나라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FIA 또는 그 ASN이 관할하지 않는 국제경기(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 포함) 참가해서는 안된다.
- 2.2.8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팀 또는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경우, 이를 “제한된”(Restricted) 경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초청에 따른 경기는 “제한된” 경기가 된다. 특수한 상황이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O의 특례 요건을 구성한다면 FIA는 ASN이 국제스포츠캘린더에 “제한된” 국제경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국내경기

- 2.3.1 국내경기는 규정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국내경기 규칙을 통한 권한 포함) ASN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전적으로 놓임과 동시에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 한다.

- 2.3.2 다음 예를 제외하고 국내경기는 담당 ASN이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가진 팀과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 2.3.3 국내경기는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될 수 없으며, 국제 순위를 매길 때에 포함될 수도 없다.
- 2.3.4 국내경기는 담당 ASN의 재량에 따라서 타 ASN으로부터 발급된 라이선스 보유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
- 2.3.5 모든 국내경기는 이를 공인한 ASN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2.3.6 해외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에 참가 가능하다.
 - 2.3.6.a.i 만약 국내경기가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와 경쟁자는 해당 ASN의 단독 재량에 따라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순위에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순위에서 포인트 배분은 경기에 참가한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를 포함하고 계산될 수 있다.
 - 2.3.6.a.ii FIA 존(Zone)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Appendix Z의 제7.2조와 제7.3조를 적용한다.
 - 2.3.6.a.iii FIA가 승인한 F4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에는 위의 2.3.6.a.i 항이 적용된다.
 - 2.3.6.b 다른 ASN의 라이선스 보유자의 경기참가를 허가한 ASN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식 문서에 (특히 참가 신청 서식에) 보이도록 해서 FIA 그리고 경기 참가자와 선수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2.3.6.b.i 서킷이 FIA가 정한 경기용 자동차의 범주에 부합하는 유효한 FIA 국제 공인 서킷, 또는 관련된 ASN이 발급한 국내 공인 서킷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 2.3.6.b.ii 서킷의 공인 라이선스에 따른 경기 참가가 허가된 자동차의 범주에 관한 정보.
 - 2.3.6.b.iii 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라이선스의 등급에 관한 정보.
 - 2.3.7 해외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쟁자와 선수는 소속 ASN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다.

- 2.3.7.a 위의 허가는 해당 ASN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2.3.7.b 주최자는 AS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팀 또는 선수를 엔트리에 포함 시켜야 한다. ASN의 사전 승인이 없는 선수 또는 팀의 엔트리를 포함시킬 경우 ASN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ASN의 재량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벌칙을 부과한다.
- 2.3.7.c 오로지 ASN의 국내 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에 대해서는, ASN이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만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 2.3.8 국내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경우, 이를 “제한된” 경기로 부를 수 있다. 초청에 따른 경기는 제한된 경기가 된다.
- 2.3.9 클로드 경기는 ASN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여러 클럽이 개최하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와 시리즈

2.4.1 국제챔피언십

- 2.4.1.a FIA만이 국제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다.
- 2.4.1.b 국제챔피언십은 FIA 또는 FIA에게 서면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챔피언십 주최자는 경기주최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2.4.1.c FIA 이름을 쓰는 국제 챔피언십은 FIA의 재산이며 “세계”라는 단어를 포함한 (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어떤 단어 든)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해당 규정이 적어도 국제스포츠규정의 2.4.3조 요건과 전체 시즌에 걸쳐서 평균으로 적어도 네 개의 자동차 제조사를 참가시키는 추가 필수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

2.4.2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

- 2.4.2.a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는 같은 규정으로 관할되는 여러 개의 경기, 또는 하나의 경기로 구성될 수 있다.
- 2.4.2.b 국제경기만이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구성할 수 있다.

- 2.4.2.c 모든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신청한 ASN이 먼저 FIA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야 조직될 수 있으며 승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 2.4.2.c.i 특히 안전 측면을 고려한 경기규정과 기술규정
 - 2.4.2.c.ii 캘린더 등록 여부
 - 2.4.2.c.ii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경기가 열리는 ASN으로 부터 받은 사전 허가(날짜 포함)
 - 2.4.2.c.iv 레이스를 위한 서킷의 공인이 참가 자동차의 범주에 적합하지, 그리고 모든 경기에 대하여 안전과 의료 지원에 관한 모든 FIA 규정이 준수되는지에 대한 검증.
 - 2.4.2.c.v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타이틀이 지리적 범위, 그리고 모든 기술 및 경기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
- 2.4.2.d FIA 이름을 쓰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FIA의 소유이며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정한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주최자는 경기의 주최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4.3 “세계(월드)” 명칭의 사용

- 2.4.3.a FIA 이름을 쓰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및 해당 경기는 적어도 다음 요구 조건을 준수하며 전체 시즌에 걸쳐서 적어도 평균 네 개의 자동차 제조사를 참가시키는 추가 필수 조건 안에서만 “세계”(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모든 단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타이틀을 쓸 수 있다.
- 2.4.3.b FIA 이름을 쓰는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및 해당 경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세계” 라는 단어(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모든 단어)를 타이틀에 포함할 수 없다. 일반 규칙으로서, FIA는 다음 필수 조건에 부합하며 FIA가 이를 허가하는 것이 스포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가를 한다. 경기가 이들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FIA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4.3.b.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는 같은 시즌 동안에 적어도 3개 대륙에서 열리는 경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2.4.3.b.i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가 단 하나의 경기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 하나의 경기에 참가할 경기 참가자를 선발하는 기능을 하는 히트, 경기, 또는 다른 시리즈는 적어도 3개 대륙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이 경기들은 국제스포츠캘린더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4.3.b.iii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다른 곳에 서술되어 있는 모든 권리 또는 권한에 더해서, FIA는 “세계”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거나 사용이 신청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어떤 경기든 국제스포츠규정 및 적용되는 규정의 원칙이 완전히 준수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최자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주최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FIA가 서킷 전체 그리고 모든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4.3.b.iv 관련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주최자는 각 경기에 대해서 FIA가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심사 명단 가운데서 적어도 한 명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는 심사위원회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며 경기 동안에 기록된 어떠한 심각한 규칙 위반이나 부정사함을 FIA와 경기를 제정한 ASN 그리고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영토의 관할 ASN에게 보고해야 한다.

2.4.3.c FIA는 “세계”라는 용어를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써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시리즈에 대해서는 예외로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2.4.4 국내챔피언십

2.4.4.a ASN만이 국내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다.

2.4.4.b 국내챔피언십은 ASN이 직접 또는 ASN으로부터 서면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2.4.4.c 국내 챔피언십 경기는 자국영토 밖에서 개최 될 수 있다.

2.4.4.c.i ASN은 자국 영토 밖에서 국내 챔피언십 최대 1개의 경기를 조직할 수 있고, 국내 챔피언십을 주최하는 나라와 국경이 접해있거나 또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성(FIA 월드모터스포츠카운실의 승인필요)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2.4.4.c.ii 지역(Zone)에 속하지 않은 ASN은 다음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국내 챔피언십 경기를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 공동 국경이 있는 국가들 또는(적절한 지리적인 관계) (FIA 월드 모터스포츠 카운실의 승인) 국내 챔피언십을 주최하는 국가에서 조직한다.

- 해당 국내 챔피언십은 (i) 성능 수준의 차량을 위해 예약된 경기들로만 구성된다.

- 해당 국내 챔피언십 경기는 (i)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구성되어야 한다.

- 서킷에서 열리는 경기의 경우 3kg/hp 이상,
 - 클로즈드 도로에서 열리는 경기의 경우 5kg/hp 이상,
- 또는 (ii) FIA 월드모터스포츠카운실에서 결정된 유사 차량

2.4.4.c.iii 2.4.4.c.i와 2.4.4.c.ii 는 3.6kg/hp 등급의 싱글 시터 국내 챔피언십 서킷 대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2.4.3.c 조항에 대한 예외로, ASN은 최대 2개의 경기를 조직할 수 있다. 단, 공통 국경 및/또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가 있는 국가(FIA 월드 모터 스포츠 카운실 승인가)가 국내 챔피언십을 조직할 경우에 한한다.

2.4.4.d 이에 추가적으로 FIA는 그 재량권으로, 오로지 클로즈드 경기로만 구성되는 국내 챔피언십이 해당 ASN 관할 영토의 밖에서 1회 이상 경기가 열리도록 허가할 수 있다.

2.4.5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2.4.5.a 오직 ASN만이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허가할 수 있다.

2.4.5.b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같은 규정의 지배를 받는 여러 개의 경기, 또는 단일 경기로 구성될 수 있다.

제2.5조 파크 페미

2.5.1 파크 페미 안에는 지정된 오피셜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들 오피셜 또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작, 검사, 조정 또는 수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2.5.2 파크 페미는 차량 검사가 규정되어 있는 경기에서는 의무다.

2.5.3 경기에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파크 페미가 설치되는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2.5.4 클로즈드 코스(Closed course)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파크 페미는 결승선(또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출발선)과 아주 가까워야 한다.

2.5.5 경기가 끝날 때 결승선과 파크 페미 입구 사이 구간은 파크 페미 규정을 적용받는다.

- 2.5.6 파크 퍼미는 적절한 크기를 가지며 자동차가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적절히 폐쇄되어야 한다.
- 2.5.7 감시는 파크 퍼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 오피셜이 수행하며 이들만이 경기 참가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2.5.8 랠리와 크로스컨트리 랠리에서는 통제 구역 그리고 리그룸 구역은 파크 퍼미로 간주된다. 적용되는 규정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통제 구역 안에서는 수리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제2.6조 라이선스

2.6.1 총괄 원칙

- 2.6.1.a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규정의 본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 2.6.1.b 국제스포츠규정은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자격을 얻은 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스포츠 규정 및 기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6.1.c 소속 ASN에서, 또는 소속 ASN의 인정을 받은 다른 ASN에서 제9.3.2조에 의거하여 발급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2.6.1.d 국제라이선스는 Appendix L에서 특정하지 않는다면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한다.
- 2.6.1.e 각 ASN은 FIA 규정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
- 2.6.1.f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두 개의 가명을 쓸 수는 없다.
- 2.6.1.g 라이선스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한 비용이 있을 수 있다.
- 2.6.1.h 각 ASN은 FIA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는 국가에 속해 있는 외국인에게 FIA의 사전 동의를 받아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발급된 라이선스의 목록은 FIA 사무국에서 보유한다.

2.6.2 슈퍼 라이선스

- 2.6.2.a 슈퍼 라이선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된 신청 서식을 완전하게 작성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 해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2.6.2.b FIA는 특히 후보자가 국제스포츠규정 제12.2조의 위반하였을 경우 슈퍼 라이선스를 발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거절에 대한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2.6.2.c 슈퍼 라이선스 문서는 FIA의 자산이며 이를 각 보유자에게 전달한다.

2.6.2.d 징계 결과로 슈퍼 라이선스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그 보유자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FIA 챔피언십에 참가 할 수 없다.

2.6.2.e 교통 법규 위반 중 국내의 경찰 당국이 확인한 결과, 그 위반이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거나, FIA가 지키고자 하는 모터스포츠의 이미지 또는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제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2.6.2.f 교통 법규 위반을 저지른 슈퍼 라이선스 보유자는,

2.6.2.fi FIA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2.6.2.ii 국제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익 업무 수행 의무를 지거나 슈퍼 라이선스를 일시 또는 영구 취소 당할 수 있다.

2.6.3 EU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

2.6.3.a EU 프로페셔널 경쟁자 또는 선수는 EU 국가(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 열리는 존(지역)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Appendix Z의 제7.3조를 준수한다.

2.6.3.b 이러한 국내 라이선스에는 EU 깃발이 들어 있어야 한다.

2.6.3.c 각 EU ASN,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국가의 ASN은 이들 규정을 참작하여 보험 처리를 보장한다.

2.6.3.d 이들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는 그가 경기를 하는 국가의 ASN의 관할권, 그리고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관할권 안에 들어간다.

2.6.3.e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한 정지가 결정되면 이는 FIA 웹사이트 www.fia.com에 공개된다.

2.6.4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팀 관련 스태프에 대한 등록증

2.6.4.a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어떤 사람이든 적절한 절차대로 FIA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2.6.4.a.i 최고 경영자(CEO) : 선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경영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
- 2.6.4.a.ii 최고 재무 책임자(CFO) : 선수가 월드 챔피언십 재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
- 2.6.4.a.iii 팀 단장(Team Principal) : 팀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
- 2.6.4.a.iv 경기 감독(Sporting Director) : 팀이 월드챔피언십 경기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
- 2.6.4.a.v 기술 감독(Technical Director) : 팀이 월드챔피언십 기술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
- 2.6.4.a.vi 팀 매니저(Team Manager) : 경기에서 팀의 운영 책임을 맡은 사람.
- 2.6.4.a.vii 레이스 엔지니어(Race Engineer)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람(선수당 2명) : 선수의 자동차를 책임지는 사람.
- 2.6.4.a.viii 위의 해당 규정 관련 이외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추가 스태프 멤버는 FIA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2.6.4.b.i 다른 FIA 월드챔피언십에서 선수를 대신하여 위의 2.6.4.a.i부터 2.6.4.a.vi 조항까지 명시된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람은 FIA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2.6.4.b.ii FIA 월드 챔피언십을 담당하는 FIA 스포츠 위원회는 각 챔피언십에 특성에 따라서 역할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2.6.4.c 정당하게 등록된 팀의 스태프 구성원은 참여자(Participant)로 간주된다.
- 2.6.4.d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 신청할 때, 팀은 스태프로 등록된 사람들이 일정 서식에 서명을 한 스태프 명단을 FIA에 전달해야 한다.
- 2.6.4.e 적절하게 등록된 경기 참가자 스태프의 각 구성원은 FIA로부터 등록증을 받는다. 이 등록증은 FIA가 작성하고 발급하며 FIA의 소유물로 계속 남는다.
- 2.6.4.f 등록은 해마다 1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한다.
- 2.6.4.g FIA는 제12.2조를 위반한 사람의 등록을 보류하고 취소할 권리가 있다. FIA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 2.6.4.h FIA는 적절하게 등록된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 구성원이 월드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의 보호 구역에 출입할 권한을 일시 또는 완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2.6.4.i 경기 참가자의 조직에 변화가 있어서 그 때문에 FIA에 등록해야 하는 스태프 구성원의 명단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기 참가자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지 7일 안에 FIA에 이를 통보하고 같은 기한 안에 갱신된 명단을 제출하는 한편, 그 역할 수행이 중단된 사람의 등록증을 FIA에 반납해야 한다.
- 2.6.5 FIA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포물러 원 파워 유닛 및 포물러 E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제조업체의 스태프를 위한 등록증.
FIA 월드 챔피언십 경기에 참가한 선수에게 포물러 원 전원 장치와 포물러 E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제조사의 스태프를 위한 등록증.
- 2.6.5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the staff of manufacturers registered to supply Formula One power units and Formula E cars to Competitors entered in the FIA World Championships.
- 2.6.5.a FIA 포물러 원 월드 챔피언십에서 포물러 원 전원 장치가 참가자에게 공급되도록 등록된 제조사의 스태프 또는 멤버가 FIA에 적합하게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2.6.5.b FIA 포물러 E 월드 챔피언십에서 포물러 E 차량을 참가자에게 공급되도록 등록된 제조사의 스태프 또는 멤버가 FIA에 적합하게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 2.6.5.c 정당하게 등록된 제조사의 스태프는 참가자로 간주된다.
- 2.6.5.d FIA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한 경기참가자에게 포물러 원 전원 장치 또는 포물러 E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할 때, 해당 제조사는 작성된 양식에 서명하여 등록할 스태프 명단을 FIA에 접수해야 한다.
- 2.6.5.e 앞서 제조사 직원으로 공정하게 등록된 멤버는 제조사를 통해 FIA에 등록 인증서를 제공받을 것이며, FIA가 작성하고 발행하여 FIA의 소유물로 남는다.
- 2.6.5.f 등록은 FIA 포물러 원 월드 챔피언십의 전원 장치 제조사와 FIA 포물러 E 월드 챔피언십 차량 제조사를 위한 FIA 등록 절차에서 정의된 주기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 2.6.5.g FIA는 제12.2조를 위반한 사람의 등록을 보류하고 취소할 권리가 있다. FIA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 2.6.5.h FIA는 적절하게 등록된 제조사의 스태프 등 구성원이 월드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 보호 구역에 출입할 권한을 일시 또는 완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 2.6.5.i 앞서 제조사의 조직에 변화가 있어서 그 때문에 FIA에 등록해야 하는 스태프 등 구성원의 명단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사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지 7일 안에 FIA에 이를 통보하고 같은 기한 안에 갱신된 명단을 제출하는 한편, 그 역할 수행이 중단된 사람의 등록증을 FIA에 반납해야 한다.

제2.7조 특별 조건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또는 트로피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FIA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 2.7.1 ~ 2.7.3조항이 적용된다.

- 2.7.1 국제 랠리에 참가가 허가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2.7.1.a 모든 국제 랠리에서 모든 자동차의 동력은 FIA 월드랠리챔피언십을 제외하고 최소 무게/마력 비율이 3.4kg/hp(4.6kg/kw)로 제한된다. 어느 때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 FIA는 이동력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 2.7.1.b 다음 자동차만이 국제 랠리에 참가할 수 있다.
 - 2.7.1.bi 투어링 자동차(그룹 A). 단, 특정한 진화를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형식과 다른 경우
 - 2.7.1.bii 프로덕션 자동차(그룹 N, R, 랠리 그리고 RGT).
 - 2.7.1.c 특정한 진화를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형식과 다르지 않는 한, 그룹 A, N, R 그리고 RGT 자동차는 공인이 만료된 날짜 이후에도 8년까지는 다음을 조건으로 월드랠리 챔피언십을 제외한 국제 랠리 참가가 허용된다.
 - 2.7.1.ci 운영 점검과 차량 검사 과정에서 FIA 호몰로게이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2.7.1.cii 차량은 공인이 만료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규정(국제스포츠규정 부칙 J)을 준수하며 기술 오피셜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경기 참가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한다.

2.7.1.d 이들 자동차에 쓰이는 터보 리스트릭터의 크기와 최소 무게는 현재 유효한 것 이어야 한다.

2.7.2 크로스컨트리 랠리와 바하 크로스컨트리 랠리

다른 자동차들을 제외하고 FIA 기술규정에 정의된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그룹 T)만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2.7.3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

2.7.3.a 모든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는 국제스포츠캘린더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2.7.3.b FIA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지 않는 한은 해마다 대륙 당 하나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만이 조직될 수 있다.

2.7.3.c 경기는 21일을 넘겨 지속될 수 없다(차량 검사와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 포함).

2.7.3.d 다른 자동차들을 제외하고 FIA 기술규정에 정의된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그룹 T)만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2.7.4 기록 도전

2.7.4.a 기록 보유자

2.7.4.ai 개별 도전 과정에서 기록이 수립되었다면 기록 보유자는 그 도전을 위한 허가를 승인 받은 사람이며 그 허가를 위한 공식 신청을 한 사람이다.

2.7.4.a.ii 경기 과정에서 기록이 수립되었다면 기록 보유자는 그 성과를 기록한 자동차로 참가한 이름을 가진 경기 참가자다.

2.7.4.b 관할권

2.7.4.bi ASN은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록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2.7.4.b.ii FIA는 모든 세계 기록 수립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며, 그 신청은 ASN이 제출 해야 한다.

2.7.4.c 기록 수립 자격이 있는 자동차

각각의 국제 기록은 자동차만이 세울 수 있다.

2.7.4.d 공인되는 기록

- 2.7.4.d.i 공인되는 기록은 지역 기록, 국내 기록, 세계 기록, 절대 세계 기록(Absolute World Records), 통산 세계 기록 (Outright World Record) 뿐이다.
- 2.7.4.d.ii 똑같은 기록이 위에서 언급된 범주 가운데 여러 개에 대해 공인될 수도 있다. 서킷 기록과 도로 기록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 2.7.4.e 소속 등급에 한정된 자동차 기록
 소속 등급 안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거나 경신한 자동차는 이를 통해 절대 세계 기록을 경신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높은 등급이 세운 같은 기록을 경신할 수는 없다.
- 2.7.4.f 공인 기간 및 거리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에서 정한 대로인 국내 기록에 대한, 그리고 세계 기록에 대한 기간과 거리만이 공인된다.
- 2.7.4.g 레이스 동안 수립되는 기록
 레이스 동안에는 시간 또는 거리 등의 어떠한 기록도 공인되지 않는다. 단, 랩 기록은 레이스 동안 수립될 수 있다.
- 2.7.4.h 기록을 위한 도전
 기록 도전을 위한 조건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 2.7.4.i 세계 기록 공인을 위한 조건
- 2.7.4.i.i 세계 기록은 FIA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수립되었거나, 예외로 대표 단체가 없지만 FIA로부터 조직 허가를 받은 나라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공인 받지 못한다.
- 2.7.4.i.ii 어떤 세계 기록도 FIA가 승인한 코스에서 그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인 받지 못한다.
- 2.7.4.j 기록 명부
- 2.17.4.j.i 각 ASN은 해당 국가에서 수립 또는 경신된 모든 기록의 명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요청에 따라 국내 또는 지역 기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 2.17.4.j.ii FIA는 세계 기록의 명부를 보유하며 요청에 따라서 이들 기록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 2.7.4.k 기록의 발표
- 2.7.4.k.i 기록에 대한 주장이 정식 공인될 때까지는 “확정 필요”(Subject to Confirmation)라는 문구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덧붙이지 않고는 결과를 공고할 수 없다.
- 2.7.4.k.ii 이 규정을 무시할 경우 기록에 대한 주장은 자동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며, 이 처분은 ASN이 부과하는 어떠한 추가 벌칙에 대해서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 2.7.4.l 기록 도전 수수료
- 2.7.4.li ASN은 국내 기록 도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확정되고 ASN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 2.7.4.lii FIA는 세계 기록 도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확정되고 FIA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제3조 경기 - 조직 세부 사항

제3.1조 공인의 필요성

경기는 관련된 국가의 ASN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한다.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국가에서 열린다면 FIA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공인의 신청

- 3.2.1 모든 공인 신청은 적용되는 기한에 따라서 ASN에 다음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각 경기에 적용될 특별규정의 초안. 기록 도전인 경우에는 제외.
- 3.2.2 ASN이 사전에 공인 비용을 설정한 경우에 신청은 그 비용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공인이 허가 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반환된다.

제3.3조 공인서의 발급

- 3.3.1 ASN이 선택한 형식에 따라서 공인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 3.3.2 공인을 신청하는 대회주최자는 국제스포츠규정이 명기하는 조건 그리고 적용되는 FIA 및 관련 ASN의 경기 및 기술규정을 만족해야 공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법과 규정의 준수

- 3.4.1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도로, 서킷 또는 다른 지정된 지역)에서 조직위원회가 관할 지역당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얻는 것을 착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ASN은 조직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
- 3.4.2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공도에서 열리는 경기의 부분은 그 나라의 도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3.4.3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국제스포츠규정 뿐 아니라 스피드웨이에서 레이스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된 특별규정의 적용도 함께 받는다.
- 3.4.4 규정 발표 : 여러 FIA 챔피언십 경기의 규정은 적용되는 FIA 챔피언십 경기규정에 따라서 FIA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5조 특별규정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

(FIA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에는 적용되지 않음)

- 3.5.1 대회주최자 정보;
- 3.5.2 경기의 이름, 성격, 그리고 정의;
- 3.5.3 국제스포츠규정 및 국내규정에 따라서 경기가 개최된다는 문구;
- 3.5.4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위원회의 주소(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 포함);
- 3.5.5 경기가 열리는 장소와 날짜;
- 3.5.6 구체적인 경기 계획 (서킷의 길이와 방향, 참가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클래스 그리고 카테고리 설명, 주유방식, 해당된다면 엔트리 수 제한, Appendix O 를 근거로 한 스타트 허용 차량 수 등);
- 3.5.7 참가에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제출할 주소, 시작과 종료 날짜 및 시간, 참가비용 등);
- 3.5.8 보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
- 3.5.9 출발 날짜, 시각, 특성, 핸디캡의 명시;
- 3.5.10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주지, 특히 필수 등급 관련 라이선스 및 신호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H 참조);

3.5.11 순위를 정하는 방식;

- 3.5.12 잠정 및 최종 순위 게시의 장소와 시간. 주최자가 명시한 대로 공식 순위를 게시할 수 없는 경우, 순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 3.5.13 상금의 자세한 내역;
- 3.5.14 항의에 관한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주지;
- 3.5.15 심사위원과 다른 오피셜들의 이름;
- 3.5.16 공식 게시판의 위치 또는 디지털 게시판 위치;
- 3.5.17 적용될 경우에는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

제3.6조 특별규정의 개정

특별규정은 이미 참가한 모든 경기 참가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거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은 참가 신청 기간이 시작된 뒤에는 개정될 수 없다.

ASN 및 FIA의 사전협약에 따라, 주최자는 해당 경기(competition)가 시작될 때까지 대회(event)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위 관련 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규칙 2.1.7.a 조항을 따름).

제3.7조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

- 3.7.1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에 따라서 경기가 개최된다는 문구;
- 3.7.2 경기의 장소와 날짜;
- 3.7.3 예정된 경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시간표;
- 3.7.4 팀과 선수의 이름 및 이들의 자동차에 주어진 엔트리 번호;
- 3.7.5 존재한다면 핸디캡;
- 3.7.6 상금의 자세한 내역;
- 3.7.7 심사위원과 다른 오피셜들의 이름.

제3.8조 참가 신청

3.8.1 참가 신청은 경기 참가자와 대회주최자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이는 경기 참가자로 하여금 출전이 받아들여진 경기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하게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강제한다.

3.8.2 이는 또한 대회주최자로 하여금 경기 참가자가 관련된 경기에 충실하게 참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한정하여 참가가 이루어졌을 때 경기 참가자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의무화한다.

제3.9조 참가 접수

3.9.1 ASN에서 공인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에 동의하고 나면 그 조직위원회는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9.2 참가 신청 형식

최종 참가 신청은 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형식에 지명된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라이선스 번호를 함께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별규정에서는 선수 지명을 위한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9.3 참가 신청비 지불

특별규정에 참가비가 정해져 있다면 이 비용과 함께 제출되지 않은 모든 참가 신청은 무효가 된다.

3.9.4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경기 참가를 위한 ASN의 허가

3.9.4.a 해외에서 조직된 국제경기에 참가를 원하는 경기 참가자와 선수는 소속된 ASN의 승인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 있다.

3.9.4.b 이러한 승인은 ASN이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9.4.c 주최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허가가 없는 외국 경기 참가자 그리고/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일 경우, 주최자는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된다. FIA에 이 사실이 통보되면 FIA가 결정하는 처벌을 받는다.

3.9.4.d 허가는 오로지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는 경기에 대해서 ASN이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만 내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제3.10조 참가의 준수

3.10.1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에 참가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 그 조직위원회를 승인한 ASN이 판정을 내린다.

3.10.2 경기 날짜 전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참가 신청을 완료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ASN이 설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자격 정지가 된다 (라이선스의 일시 취소).

3.10.3 보증금 지불은 그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제3.11조 참가 신청 마감

3.11.1 특별규정에는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날짜와 시각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3.11.2 국제경기에 대해서는 참가 신청 종료는 이벤트를 위해 예정된 날짜보다 적어도 7일 이전에 참가 신청이 마감되어야 한다.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이 기한은 관련 ASN 또는 FIA 재량으로 정한 날짜만큼 줄어들 수 있다.

제3.12조 전자 수단으로 접수된 참가 신청

3.12.1 참가 신청은 무엇이든 전자적 통신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 참가 신청 마감을 위해 지정된 기한 전에 접수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비를 함께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12.2 전자 통신(예를 들어서 이메일, 그밖에)에 나와 있는 송신 시각은 시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다.

제3.13조 거짓된 문구를 포함한 참가 신청

3.13.1 거짓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신청이든 무효로 간주된다.

3.13.2 이러한 참가 신청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참가비가 몰수될 수도 있다.

제3.14조 참가 신청 거부

3.14.1 국제경기에 대한 참가 신청이 조직위원회로부터 거부될 경우, 조직위원회는 거부된 신청자에게 늦어도 참가 신청 마감으로부터 2일 안에, 늦어도 경기 시작 5일 전에 거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14.2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거부에 관련된 통보에 한하여 국내규정이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15조 조건부 참가

3.15.1 특별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 출발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참가한 다른 경기 참가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와 같은 경우에 참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3.15.2 조건부 참가는 참가 신청 마감 다음날까지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신 또는 어떤 전자 수단으로든 통보되어야 하지만 조건부로 참가한 경기 참가자는 허가 받지 않고 한 경기를 다른 경기로 대체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제3.16조 참가자 발표

3.16.1 대회주최자가 적절하게 작성된 참가 신청서를 받았으며 참가비가 있는 경우, 참가비와 함께 받은 신청이 아니라면 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3.16.2 조건부로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는 참가 명단 발표 시점에서 조건부 참가자로 지정된다.

제3.17조 경기 참가자의 선택

3.17.1 참가자 수 또는 스타트 허용차량 수의 제한을 규정했다면 경기 참가자 선택 절차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17.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은 제비뽑기 또는 ASN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8조 대기자의 지명

어떤 경기 참가자든 경기 참가자의 선택(제3.17조)에 관련된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에 따라서 탈락되었을 경우, 이들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대기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제3.19조 자동차의 참가

3.19.1 한 대 그리고 똑같은 자동차는 같은 경기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없다.

3.19.2 예외적으로 ASN은 관할 영토 내의 같은 이벤트에서 같은 자동차가 한 번 넘게 참가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같은 선수는 한 번만 운전해야 한다.

제3.20조 참가자의 공식 명단

조직위원회는 경기 참여가 승인된 참가자의 공식 명단을 늦어도 이벤트 시작 48시간 전까지 ASN에 보내고 각 경기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참가신청이 이 시간 이후에 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이 때는 경기 시작 전에 공식 명단을 각 참가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제3.21조 특별구역

특별구역에 출입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나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조 투어링 어셈블리

제4.1조 일정

투어링 어셈블리에서는 일정은 의무지만 단순한 패시지 컨트롤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들이 주행할 때에 부과되는 평균 속도는 없다.

제4.2조 총괄 조건

4.2.1 스피드 이벤트를 제외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추가 모터스포츠 활동을 투어링 어셈블리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들 추가 모터스포츠 활동은 도

착 지점에서만 열려야 한다.

- 4.2.2 이들 투어링 어셈블리에는 상금이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 4.2.3 투어링 어셈블리는 참가자가 여러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스포츠 캘린더 등록이 면제되지만 규정을 승인해야 하는 ASN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가에서 조직될 수 없다.
- 4.2.4 규정은 조직 세부 사항에 관련된 국제스포츠규정 안의 경기에 대한 규정과 똑같은 정신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 4.2.5 투어링 어셈블리 경로가 하나의 ASN 관할 영토만을 통과한다면 해당 투어링 어셈블리의 참가자가 라이선스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 4.2.6 그렇지 않은 경우, 투어링 어셈블리는 국제 코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참가자는 필요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5조 퍼레이드

제5.1조 조건

다음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 5.1.1 오피셜 카 한 대가 퍼레이드를 선도하며 다른 한 대가 가까이에 있다.
- 5.1.2 이 두 대의 오피셜 카는 경기위원장의 통제 속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운전한다.
- 5.1.3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 5.1.4 시간 계측은 금지된다.
- 5.1.5 경기의 틀 안에서, 어떤 퍼레이드이던 특별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자동차는 공식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제5.2조 허가

국내 퍼레이드는 ASN으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열릴 수 없다.

제6조 데모 주행

제6.1조 조건

다음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 6.1.1 데모 주행은 항상 경기위원장이 통제해야 한다.
- 6.1.2 5대가 넘는 자동차의 데모 주행은 항상 세이프티 카의 통제를 받으며, 세이프티카는 경기위원장의 통제 속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대열을 선도하여 운전해야 한다.
- 6.1.3 모든 마샬은 각자의 포스트에 있어야 하며(이벤트의 틀 안에서), 구조와 신호 서비스는 필수다.
- 6.1.4 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6.1.5 선수는 적절한 안전 복장을 입어야 한다(FIA가 승인한 복장과 헬멧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주최자는 최소 복장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 6.1.6 자동차는 안전에 근거를 둔 차량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6.1.7 차량 검사 뒤에 정확한 참가 명단이 발표되어야 한다.
- 6.1.8 탑승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자동차가 원래부터 선수와 똑같은 안전 조건으로 탑승자를 태우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탑승자들이 적절한 안전 복장을 입고 있는 경우(FIA가 승인한 복장과 헬멧을 강력하게 권고한다)에는 예외다. 주최자는 최소 복장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 6.1.9 청색기를 제시한 마샬의 지시가 아닌 한은 앞지르기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 6.1.10 시간 계측은 금지된다.
- 6.1.11 이벤트의 틀 안에서, 어떤 데모 주행이든 특별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자동차는 공식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제6.2조 허가

국내 데모 주행은 ASN으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열릴 수 없다.

제7조 코스와 서킷

제7.1조 국제코스

7.1.1 경기의 코스가 여러 국가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경우, 이 경기 주최자의 ASN은 먼저 국제 스포츠 캘린더 등록을 요청하기 이전에 해당 영토의 각 ASN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국가에서는 FIA에게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7.1.2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를 통과하는 이들 국가의 ASN들은 영토의 한계 안에서 코스 전체에 걸친 경기 통제권을 보유하지만, 경기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은 주최자가 속한 ASN이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제7.2조 코스의 승인

코스는 ASN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을 위해서는 주행해야 할 정확한 거리와 루트를 제출해야 한다.

제7.3조 거리 측정

기록 시도가 아닌 경기에 대해서는 10 킬로미터까지의 거리는 코스의 중앙선을 따라서 자격 있는 측량사가 측정해야 한다. 1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는 공식 도로 표지 또는 축척이 25만분의 1을 넘지 않는 공식 지도로 결정해야 한다.

제7.4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라이선스

7.4.1 레이스 또는 기록 도전이 예정될 때, 상설 또는 임시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 라이선스 신청은 ASN이 FIA에 해야 한다.

7.4.2 FIA는 자동차 레이스를 위한 서킷 또는 기록 도전을 위한 코스의 라이선스를 내 줄 수 있으며, 코스가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보장하기 위해 감독관을 임명한다.

7.4.3 FIA는 ASN 및 인스펙터와 협의를 거쳐서 라이선스를 거부 또는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취소 또는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한다.

7.4.4 코스 또는 서킷 라이선스에 들어 있는 정보

7.4.4.a FIA에게 승인 받은 라이선스에는 코스 또는 서킷의 길이 그리고 레이스 서킷인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에 대해 유효한 경주 차량 카테고리 등급을 표시한다.

7.4.4.b 필요하다면 코스 또는 서킷이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해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제7.5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내라이선스

ASN은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해 비슷한 라이선스 승인을 할 수 있다.

7.5.1 ASN에게 승인 받은 라이선스에는 코스 또는 서킷의 길이, 그리고 지역 또는 국내 기록 도전을 위해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7.5.2 또한 코스나 서킷에서 선수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하는 규칙을 서술한다.

제7.6조 상설 및 임시 코스와 서킷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상설 및 임시 코스와 서킷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FIA가 정기적으로 정한다.

제7.7조 서킷 라이선스의 게시

서킷 라이선스는 유효 기간 동안 서킷에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8조 출발과 히트

제8.1조 출발

8.1.1 두 가지 출발 유형이 있다.

8.1.1.a 롤링 스타트

8.1.1.b 스탠딩 스타트

8.1.2 경기 차량은 스타트 방식에 상관 없이 출발 신호 순간에 출발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경우에도 출발 신호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8.1.3 기록 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관련된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출발 특

성을 정의해야 한다.

8.1.4 시간 계측이 쓰일 경우에는 출발 때부터 시작된다.

제8.2조 출발선

8.2.1 롤링 스타트를 하는 모든 경기에서 출발선은 이를 지났을 때 그 자동차의 시간 계측이 시작되는 선이다.

8.2.2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서 그리드가 있는 경우, 출발선은 각 차량의 그리드 위치의 앞에 있는 선이다.

8.2.3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서 그리드가 없는 경우, 출발선은 각 자동차(그리고 각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의 위치가 정해진 선이다.

8.2.4 관련된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상대 위치와 이들 위치가 결정되는 방법을 출발 전에 정의해야 한다.

제8.3조 롤링 스타트

8.3.1 롤링 스타트는 시간 계측이 시작되는 순간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방식이다.

8.3.2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은 경기 차량은 그리드 순서를 유지하면서 오피셜 카의 선도에 따라서 출발 그리드를 떠나며,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줄 또는 나란히 주행해야 하고, 이들 규정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발에 실패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의 절차 역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8.3.3 오피셜 카가 트랙을 떠났을 때, 자동차의 전체 대열은 출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선두 차량 뒤에서 순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관련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발 신호가 주어지야 하며, 자동차들이 출발선을 지나야 레이스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선두 자동차가 출발선을 지나고 기록 계측이 시작되어야 한다.

제8.4조 스탠딩 스타트

8.4.1 스탠딩 스타트는 출발 신호가 주어지는 순간에 자동차가 멈추어 있는 방식이다.

8.4.2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기록 도전에서 자동차는 시간 계측을 하는 부분이 출발선으로부터 뒤로 10cm 넘게 떨어져 있지 않도록 멈추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엔진은 출발 전부터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8.4.3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출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엔진을 작동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시켜야 할지를 특별규정에서 정해야 한다.

8.4.4 개별 출발 또는 한 줄로 나란히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4.4.a 시간 계측이 자동 계측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들은 위 스탠딩 스타트로 하는 기록 도전에 대한 정의와 같이 출발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8.4.4.b 시간 계측이 시계를 쓰는 방법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계측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들은 출발 전에 출발선이 있는 지면에 앞쪽 휠의 일부가 닿도록 자리를 잡아야 한다.

8.4.5 그리드 대형으로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4.5.a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한 출발 위치 기준으로 정한 어떤 출발 위치든 시간 계측은 출발 신호가 나올 때 시작된다.

8.4.5.b 이때부터,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레이스가 서킷에서 열리는 경우, 각 차량이 첫 번째 랩을 마쳤을 때부터 시간 계측이 된다. 추가적으로:

- 만약 컨트롤라인이 출발선 또는 피트레인 끝보다 앞에 있는 경우, 각 차량은 컨트롤라인을 처음 통과할 때 한 바퀴를 완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 만약 컨트롤라인이 출발선 또는 피트레인 끝에 있는 경우, 각 차량은 컨트롤라인을 두번째로 통과할 때 한바퀴를 완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8.4.6 출발 그리드가 최종 발표된 뒤, 그리드 출발을 못하는 차량의 자리는 비워둔 채로 남겨 놓으며, 다른 차량은 그리드에서 발표된 위치를 유지한다.

제8.5조 스타터

모든 국제 스피드 경기에서 스타터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오피셜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여야 한다.

제8.6조 부정 출발

8.6.1 다음과 같이 경기 차량이 출발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부정출발로 간주된다:

8.6.1.a 서킷에서:

스탠딩 스타트의 경우,

- 출발 신호 시, 라인(앞면 및 옆면)을 벗어난 프론트 타이어의 접촉 패치 없이 배정된 그리드 박스에 정지해 있어야 한다.

롤링 스타트의 경우,

- 출발 신호가 주어질 때까지, 선이나 그리드 박스 내에서 이동하는 그리드를 주행할 때 미리 가속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속도로 가속하지 않아야 하며 배정된 그리드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8.6.1.b 오피셜이 지정된 위치에서 차량이 출발하는 스탠딩 스타트 종목에서:

- 차량은 오피셜이 지정한 위치에 정확히 정지해야 하며, 이후 출발신호가 주어질 때 까지 해당 위치에서 전진, 후진 또는 해당 위치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8.6.1.c 관련 스포츠 규정, 특별규정, 레이스 디렉터(지명된 경우) 또는 경기위원장은 이러한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

8.6.2 어떤 부정 출발이든 이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제8.7조 히트

8.7.1 경기는 여러 히트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식 프로그램에 공개되어야 한다.

8.7.2 이러한 히트들의 구성은 필요할 때에는 바꿀 수 있으나 심사위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제8.8조 동틀

동틀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 참가자들은 순위 결과에서 이들이 기록한 순위에 걸려 있는 상금 및 그에 따른 상을 나눠 가지거나, 이들 경기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관련 경기 참가자들만으로 제한된 추가 경기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처음의 경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다.

제9조 경기 참가자와 선수

제9.1조 경기 참가자 (Competitor)와 선수의 등록

9.1.1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로서 자격을 얻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시민권을 가진 나라의 ASN에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9.1.2 만약 참가 신청서에 경기 참가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퍼스트 선수가 경기 참가자를 겸하며 그에 따른 두 개의 라이선스를 가져야 한다.

제9.2조 라이선스의 발급

9.2.1 ASN은 그 ASN의 명칭과 함께 “팀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선수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또는 ISC 부칙 L에 정의된 “장애인 선수용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FIA가 승인한 형식모델에 따라 작성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9.2.2 FIA 국제 라이선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곧,

9.2.2.a 경기 참가자 라이선스

9.2.2.b 선수 라이선스

9.2.2.c 장애인 선수용 라이선스

9.2.3 각 ASN은 국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허가된다.

9.2.4 또한 ASN은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ASN이 정할 수 있다. 국제 라이선스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국가 안에서만, 또는 경기의 특정한 범주에서만 유효하다는 문구를 더한다.

제9.3조 라이선스 발급 권한

9.3.1 각 ASN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9.3.2 각 ASN은 다음에 명시한 바에 따라서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게, 라이선스 발급 권한을 가진다.

9.3.2.a 소속 ASN이 사전에 발급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년에 단 한 번 뿐이다.

9.3.2.b 다른 국가에 살고 있다는 타국 거주 증거를 소속 ASN(여권을 발급한 나라의)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한 날 기준으로 18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9.3.2.c 소속 ASN은 원래 발급되었던 라이선스를 회수해야 한다.

9.3.2.d 위의 조건은 속도제한 경기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속도제한 경기가 개최되는 국가의 ASN에서 발급된 국제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9.3.3 다른 ASN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속 ASN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떤 사람도 그 해에 유효한 소속 ASN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9.3.4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라이선스 보유자가 현재 년도 도중에 라이선스의 국적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소속 ASN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소속 ASN에 기존 라이선스를 반납한 다음에만 국적을 바꿀 수 있다.

9.3.5 ASN은 FIA에 사전에 동의를 얻어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국가에 속한 외국인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ASN은 FIA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절할 내용이 있으면 FIA에게 이를 알린다.

9.3.6 예외적으로 어떤 ASN이 공인한 드라이빙 스쿨에 실제로 다니는 학생은 학생의 소속 ASN과 주최국 ASN의 동의를 받는 조건 하에서 이 드라이빙 스쿨에서 조직하는 그 나라 국내경기에 두 번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최국 ASN에 원래의 라이선스를 경기 기간 동안 임시 예치해야 한다.

제9.4조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국적

9.4.1 국제스포츠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어떤 AS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그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ASN의 국적을 얻은 것으로 본다.

9.4.2 라이선스의 국적에 관계없이 FIA 월드챔피언십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모든 공식 문서, 발행물 그리고 시상식에서 여권 국적을 유지한다.

제9.5조 라이선스의 거절

9.5.1 ASN과 FIA는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의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9.5.2 이러한 거절 이유는 명시되어야 한다.

제9.6조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

라이선스는 해마다 12월 31일에 만료되어야 한다.

1. 국내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ASN의 방침에 따른다.
2. 국제 라이선스의 경우 부칙(Appendix) L의 방침에 따른다.

제9.7조 부과되는 라이선스 발급비

9.7.1 ASN은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해마다 ASN이 정한다.

9.7.2 FIA는 국제 라이선스에 부과된 수수료를 ASN에게서 통보 받아야 한다.

제9.8조 라이선스의 유효성

9.8.1 ASN이 발급한 팀 또는 선수의 라이선스는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유효하며, 이 라이선스 보유자는 ASN 공인 경기는 물론 국제스포츠 캘린더에 등록된 모든 경기에 대한 참가 자격을 가진다. 단, ASN의 라이선스 승인에 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언급된 조건을 적용 받는다.

9.8.2 클로즈드 경기에 대해서, 라이선스 보유자는 적용되는 경기 및 특별규정에 포함된 특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9.9조 라이선스의 제시

경기에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오피셜의 라이선스 제시 요청이 있을 때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10조 비공인경기의 참가

9.10.1 비공인경기에 참여하는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9.10.2 자격정지와 관련하여, 비공인경기가 ASN의 관할 밖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이라면, 두 ASN이 자격정지 기간을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했다면 FIA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9.10.3.a 해당 ASN의 캘린더에 등록된 국내 경기만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9.10.3.b 기록 도전을 제외하고, 인터넷 사이트 www.fia.com 내에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된 국제경기만이 공인경기로 인정된다.

제9.11조 의료 기록 관리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I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진단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9.12조 가명

9.12.1 라이선스를 가명으로 요청하려면 관련된 ASN에 특별 신청을 해야 한다.

9.12.2 이 경우 승인되었다면 라이선스는 그 가명으로 발급된다.

9.12.3 가명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든 경기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

9.12.4 가명을 바꾸려면 원래의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9.12.5 가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ASN을 통해 본명으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본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제9.13조 참가 신청을 한 선수 교체

9.13.1 참가 신청이 마감되기 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금지 조항이 규정에 없으면 가능하다.

9.13.2 참가 신청이 마감된 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4조 식별 번호

적용되는 규정 안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 경기 동안 각 자동차는 국제스포츠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번호 또는 표식을 잘 보이게 붙여야 한다.

제9.15조 경기 참가 팀의 책임

9.15.1 경기 참가팀은 경기 또는 챔피언십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인, 선수, 미캐닉, 컨설턴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경기 참가자가 보호 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9.15.2 이에 더해서 이들 각각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또는 관련된 ASN의 국내규정 위반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을 진다.

9.15.3 FIA의 요청에 따라서, 경기 참가 팀은 경기 또는 챔피언십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전체 목록을 이들을 대표하여 FIA에 제공한다.

제9.16조 허가되지 않는 다른 경기 참가

9.16.1 어떤 국내 또는 국제경기든 이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팀은 또는 여기에서 운전하기로 한 선수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열리는 다른 경기에 참여하면 그는 후자의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ASN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자격 정지 처분(라이선스의 일시 취소)을 받는다.

9.16.2 위 두 경기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열린다면 관련된 두 ASN이 부과할 벌칙을 합의하며, ASN이 합의에 실패했다면 이 문제는 적절한 결정을 위해서 FIA에 전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FIA의 결정이 최종이 된다.

제9.17조 FIA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스포츠 업무 기간 후 제한 사항

FIA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참가자는 FIA 전 회장 또는 스포츠 담당 전 부 회장을 퇴임 후 6개월 동안 기용(고용인, 독립 계약자, 컨설턴트 또는 어떠한 형태 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한으로 FIA 전 회장이나 전 스포츠 담당 회장 대행이 그들의 임기 중에 획득한 비밀정보 또는 이득을 입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자동차

제10.1조 자동차의 분류

기록 도전과 그 밖에 다른 경기 모두에 대해서, 자동차는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또는 어떤 유형이든 동력원의 능력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록 도전과 경기는 관련된 규정 또는 기록 등급에 따라서 그 제한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으로 제한 될 수 있다.

제10.2조 위험한 구조

심사위원회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실격 시킬 수 있다.

제10.3조 자동차의 공인 (또는 호몰로게이션)

10.3.1 자동차는 관련 기술 및 경기규정에 따른 호몰로게이션을 필요로 한다.

10.3.2 호몰로게이션 절차를 완료하고 FIA 또는 관련 ASN이 이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자동차의 차량 검사는 규정에 따른 호몰로게이션 서류에 근거해야 한다.

10.3.3 차량은 FIA가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 드라이버를 위해 개조된 차량을 제외하고 각자의 호몰로게이션 문서를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개조 증명서에 명시된 어댑테이션에 따라 차량에 대한 개조가 승인된다.

10.3.4 제출된 공인 항목 중에 무엇이든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해서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

제10.4조 실격, 자격 정지 또는 특정 자동차의 제외

10.4.1 ASN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 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경우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기에 대해서 실격, 자격 정지 또는 특정한 자동차를 제외 시킬 수 있다.

10.4.2 ASN은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자격 정지, 또는 특정한 자동차를 제외 시킬 수 있다.

10.4.3 만약 국제적인 자격 정지 또는 제외인 경우에는 ASN이 FIA에 보고하며, FIA는 모든 다른 ASN에게 이를 통보한다. 이들 다른 ASN들은 처분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관할하는 모든 경기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10.4.4 한 ASN이 다른 ASN에 속한 자동차에 대해서 벌칙을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해서 FIA에 항소할 수 있으며, FIA의 결정이 최종결정 된다.

제10.5조 자동차 모델에 대한 자격 정지 및 제외

10.5.1 ASN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이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영토 안에서 그 자동차의 모델을 자격 정지 시킬 수 있다.

10.5.2 ASN이 이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거나 해당 모델을 제외시키고자 할 때에는 FIA 회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하며, FIA 회장은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한다.

10.5.3 국제재판소는 FIA 회원 두 명, 그리고 이들이 상호 합의로 정할 또 한 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처음 두 명의 FIA 회원이 세 번째 회원 지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 번째 회원도 FIA 회장이 지명한다.

10.5.4 국제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벌칙을 받은 제조사는 국제스포츠규정과 부속 조항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제조사의 소속 ASN을 통하여, 또는 국제적 벌칙을 요청한 ASN을 통하여 국제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0.5.5 제조자가 속한 나라의 ASN이 국제적인 벌칙의 부과를 신청한 ASN일 경우, 그 ASN은 FIA에 항소를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6조 자동차의 광고

- 10.6.1 자동차의 광고는 국제스포츠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다.
- 10.6.2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자동차의 광고가 정치적, 종교적이거나 또는 FIA의 이익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을 부착함이 허용되지 않는다.
- 10.6.3.a ASN은 그 관할권 안에서 조직되는 경기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을 지정해야 한다.
- 10.6.3.b 경기의 특별규정은 이 특별 조건은 물론 그 경기가 열리는 국가 안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법적 그리고 행정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제10.7조 허위 광고

- 10.7.1 경기의 결과를 광고하는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회사든 언급하는 성과의 정확한 조건, 경기의 범주, 등급 및 그 밖에 특성, 자동차의 특성, 그리고 순위 또는 결과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10.7.2 대중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정보를 생략하거나 덧붙이면 광고의 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벌칙을 받을 수 있다.
- 10.7.3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들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결과에 관한 모든 광고에는 다음 문구를 넣어야 한다. “FIA의 공식 결과 발표를 필요로 함.”
- 10.7.4 이러한 규칙은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한 경기에서 거둔 우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10.7.5 이러한 광고에는 관련된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 있는 FIA 로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 10.7.6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FIA는 누구든 광고의 공개에 책임이 있는 경기 참가자, 자동차 제조사, 선수, ASN 또는 회사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10.7.7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공급한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에 부여하는 이름을 둘러싼 어떠한 항의 또는 분쟁이든 만약 이들 제조사가 모두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의 ASN이, 이들 제조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면 FIA가 결정한다.

제11조 오피셜

제11.1조 오피셜의 목록

- 11.1.1 ‘오피셜’이란 다음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조 인원을 둘 수 있다:
 - 11.1.1.a 심사위원
 - 11.1.1.b 레이스 디렉터
 - 11.1.1.c 경기위원장
 - 11.1.1.d 경기 사무국장
 - 11.1.1.e 기록 오피셜
 - 11.1.1.f 기술 오피셜
 - 11.1.1.g 의료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 11.1.1.h 안전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 11.1.1.i 트랙 또는 로드 마샬
 - 11.1.1.j 플래그 마샬
 - 11.1.1.k 결승선 판정관
 - 11.1.1.l 사실 판정관
 - 11.1.1.m 스타터
 - 11.1.1.n 환경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 11.1.2 FIA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FIA가 다음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 11.1.2.a 경기 대표
 - 11.1.2.b 안전 대표
 - 11.1.2.c 의료 대표
 - 11.1.2.d 기술 대표

11.1.2e 미디어 대표

제11.2조 지휘감독권

위에 나와 있는 오피셜과는 별도로, ASN은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지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이 관할하는 모든 경기에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국민 중 누구든 개별적으로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경기의 주최자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

제11.3조 오피셜의 조직 구조

11.3.1 국제경기에서는 적어도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장, 그리고 경기의 결과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간 기록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한 명 또는 그보다 많은 기록 오피셜이 있어야 한다.

11.3.2 심사위원들은 단일체로 직무를 수행하며 특별규정 또는 무엇이든 적용되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지정한 위원장의 권한 아래에 있다.

11.3.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히 대회와 계획, 그리고 합의의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심사위원장은 안전을 제기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을 진다.

11.3.4 심사위원회 내 찬반이 갈린 경우, 심사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11.3.5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경기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11.3.6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은 경기 내내 대회 심사위원장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11.3.7 세계 기록 도전에 대해서는, ASN에서 임명한 심사위원 한 명만이 필요하다. 이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의장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1.3.8 절대 세계 기록 또는 절대 세계 속도 기록 도전에 대해서는 세 명의 심사위원회가 임명되며 두 명은 FIA가 임명한다. ASN에 의해 심사위원 1명을 제안할 수 있다.

FIA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심사위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심사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1.4조 오피셜의 지명

11.4.1 대회 심사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 경기를 주최했거나 공인을 내어 준 ASN이 지명해야 한다.

11.4.2 다른 오피셜들은 ASN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최자가 지명한다.

제11.5조 이해관계의 충돌

FIA 윤리강령 제2.2조에 따라 대회와 오피셜, 특히 심사위원, 레이스디렉터, 경기위원장, 사무국장, 기록위원장 그리고 기술위원은 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해 청렴 결백해야 하며 주체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제11.6조 임무의 경계

11.6.1 어느 경기에서도 오피셜은 정해진 임무 말고는 어떤 다른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11.6.2 모국의 ASN이 허용하는 국내 경기를 제외하고, 자신이 오피셜로 활동하는 대회에 경쟁자나 드라이버로 참가할 자격이 없다.

제11.7조 오피셜의 보수

11.7.1 FIA 또는 ASN이 내린 특별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한다.

11.7.2 다른 오피셜은 ASN이 작성한 요율에 따라서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1.8조 심사위원의 임무

11.8.1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경기의 주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11.8.2 따라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이들은 적용되는 규정을 관할하는 ASN과 FIA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8.3 예외로, ASN이 직접 주최하는 경기에서만, 그 경기의 심사위원들은 주최자의 임무를 겸할 수 있다.

11.8.4 FIA 챔피언십 대회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은 대회가 끝난 뒤에 경기 심사 보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가능한 곧바로 ASN에 보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경기의 결과와 제기된 모든 항의의 자세한 내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실격 처분, 그리고 자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11.8.5 여러 경기로 구성된 경기에서는 각 경기마다 대회 심사위원을 별개로 둘 수 있다.

11.8.6 같은 경기를 위해 임명된 여러 심사위원들이 내린 결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진다.

- 1) FIA 챔피언십 경기
- 2) FIA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
- 3) 국제 시리즈 경기
- 4) 국내 챔피언십 경기
- 5)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

제11.9조 심사위원의 권한

11.9.1 심사위원은 FIA 적절한 국제스포츠규정(ISC) 그리고 국내 규칙 및 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제11.9.3.w조 와 제14.1조 규정의 조건으로 경기 체제 내에서 지명되어야 한다.

11.9.2.a 이들은 경기 동안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

11.9.2.b 심사위원은 규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반 사항이 경기의 범위 밖에서도 발생할 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경기에서의 위반 사항이 즉시 발견 될 경우에 가능하다.

11.9.3 이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1.9.3.a 규정 위반이 벌어졌을 때 부과할 벌칙을 결정한다.

11.9.3.b 특별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1.9.3.c 히트제인 경우에는 히트의 구성 또는 수를 바꿀 수 있다.

11.9.3.d 동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출발을 허가할 수 있다.

11.9.3.e 사실 판정관이 내놓은 정정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사실 판정을 하여 기각할 수 있다.

11.9.3.f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11.9.3.g 12.3.3조에 따라 벌칙을 유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1.9.3.h 경기를 위한 예약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구역에서 사람에게 접근금지 또는 퇴장을 명령하거나 해당 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11.9.3.i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11.9.3.j 순위를 바꿀 수 있다.

11.9.3.k 위험하다고 간주하거나 경기위원장이 위험하다고 보고한 어떤 차량 또는 어떤 선수이든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

11.9.3.l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 또는 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가 그와 같이 보고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11.9.3.m 책임을 맡은 오피셜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지정 장소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1.9.3.n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는 심각한 안전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경우 경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

11.9.3.o 경기위원장 또는 주최자가 안전을 위해서 요청할 경우 공식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11.9.3.p 경기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원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FIA 챔피언십 시스템 틀 안에서 원격으로 운영될 수 있다.

11.9.3.q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

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원격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의 틀 내에서 FIA가 지정한 국제 심사위원 중 최소 한 명은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 11.9.3.r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 일시적 또는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11.9.3.s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 11.9.3.t 기술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11.9.3.u FIA(또는 ASN)의 요청에 따라, 검사할 드라이버와 오피셜의 수를 정하여, 드라이버와 오피셜에게 규정에 의한 음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11.9.3.v 레이스 디렉터가 직무를 맡고 있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에 대해서는 레이스 디렉터가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11.9.3.w 어떤 이유로든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대안으로는 권한 위임을 목적으로 구성되며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내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일부일 경우, 원래의 심사위원을 임명했던 ASN은 후속 개최지에 심사위원 한 명을 보내거나 국내 심사위원의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1.9.3.x 심사위원회는 판정을 위해 비디오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11.9.4 모든 순위 및 결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들은 오피셜들에 의해 발표되어야 하고, 공식 시간과 함께 공식 게시판에 발표되어야 하며 디지털 게시판 또한 공식 시간이 함께 공지되어야 한다. 공식 게시판과 디지털 게시판에 공지된 경우 공식 게시판에 게시한 시간이 우선시 된다.
- 11.9.5 당사자에게 심사위원의 결정을 통지한 후, 심사위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결정의 이유 및/또는 결정의 운영 부분에 포함된 모든 사무적인 오류와 관련하여서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의 결정을 통지하는 기한은 이 조항에 따라 정정된 결정이 아닌 원심의 통보일로부터 시작된다.

- 11.9.6.a FIA 도핑 방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FIA 도핑 방지 징계 위원회의 독점 권한에 속한다.
- 11.9.6.b FIA 포뮬러 원 재정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FIA Cost Cap Administration 과 FIA Cost Cap Adjudication Panel의 독점적 권한에 속한다.

제11.10조 레이스 디렉터의 임무 (서킷 레이스에서만 적용)

- 11.10.1 레이스 디렉터는 각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기간 동안 임명될 수 있다.
- 11.10.2 경기위원장은 언제나 레이스 디렉터와 협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11.10.3 레이스 디렉터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며 경기위원장은 레이스 디렉터의 동의가 표명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11.10.3.a 일정표에 맞는 연습주행과 예선의 통제, 일정표의 변경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제출이 필요할 경우)
 - 11.10.3.b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라 차량을 멈추게 함 또는 정지.
 - 11.10.3.c 경기 진행에 재시작 절차가 동반되는 위험이 판단될 경우, 규정에 따라 연습주행 또는 레이스 중단.
 - 11.10.3.d 시작 절차.
 - 11.10.3.e 세이프티 카의 사용.
- 11.10.4 만약 위의 규정과 다른 임무와 책임이 필요한 업무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은 관련 경기규정에 명시될 것이다.

제11.11조 경기위원장의 임무

- 11.11.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 11.11.2 여러 경기로 구성된 대회에서는 각 경기마다 경기위원장을 별개로 둘 수 있다.

- 11.11.3 경기위원장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경기를 지휘한다.
- 11.11.4 특히, 적절한 경우에는 레이스 디렉터와 협력하여 다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11.11.4.a 경기 행사의 치안을 유지하며 공공 안전에 대해서 더욱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군 및 경찰 당국과 함께 총괄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11.11.4.b 모든 오피셜이 각자의 포스트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11.11.4.c 모든 오피셜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11.11.4.d 경기 참가 팀과 이들의 자동차를 통제하며 실격, 자격 정지, 또는 제외된 경기 참가 팀 또는 선수가 자격이 없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11.11.4.e 각 자동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경기 참가자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바른 식별 번호를 붙이도록 보장해야 한다.
 - 11.11.4.f 각 자동차를 그 범주와 등급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선수와 마샬이 운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11.11.4.g 자동차가 올바른 순서로 출발선까지 오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신호를 낸다.
 - 11.11.4.h 공식 프로그램 변경, 또는 경기 참가자의 규정 위반, 또는 항의에 대한 어떤 제안이든 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 11.11.4.i 항의 접수 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심사위원회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 11.11.4.j 기록 오피셜, 기술 오피셜, 트랙 또는 로드 마샬로부터 보고서와 함께 결과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다른 공식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11.11.4.k 책임이 있는 경기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이벤트 사무국장에게 준비시키거나 요청해야 한다.
 - 11.11.4.l 국제경기에서 FIA가 합리적으로 결정한대로 제12.2조에 명시된 위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해당 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11.12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

- 11.12.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 그리고 이에 관련되어 필요한 모든 발표를 책임지며, 경기 참가자와 선수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검사를 맡는다.
- 11.12.2 경기 사무국장은 다양한 오피셜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11.12.3 필요하다면 경기 사무국장은 각 경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경기 위원장에게 재청할 수 있다.

제11.13조 기록 오피셜의 임무

기록 오피셜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1.13.1 경기 시작 때에 경기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경기위원장은 이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 11.13.2 경기위원장이 지시를 내릴 때마다 경기를 시작 시킨다.
- 11.13.3 ASN이 승인한 장치만을 써서 시간을 측정하며, 1000분의 1초 정밀도의 시간 측정값이 필요하다면 FIA의 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11.13.4 각 경기 차량이 코스를 완전히 주행했을 때 측정된 시간을 발표해야 한다.
- 11.13.5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에 서명하고 경기위원장에게 보고서와 함께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 11.13.6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본 시간 기록표를 심사위원회와 ASN에 전달해야 한다.
- 11.13.7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회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간 기록 또는 결과 든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제11.14조 기술 오피셜의 임무

- 11.14.1 기술 오피셜은 자동차의 모든 검사를 맡으며, 보조 인력에게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 11.14.2 이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1.14.2.a 해당 스포팅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전에는 ASN이나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 도중에는 경기위원장 그리고/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를 수행한다.

11.14.2.b ASN에서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검사 장비만을 쓴다.

11.14.2.c 어떤 공식 정보 든 ASN,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회를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11.14.2.d 자신의 책임으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에 서명하고, 위에 언급한 지휘권자 중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제11.15조 트랙 또는 로드 마샬과 플래그 마샬의 임무

11.15.1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코스를 따라서 설치된, 조직위원회가 배치한 자신의 포스트에 상주해야 한다.

11.15.2 경기가 시작하는 즉시 각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경기위원장의 통제 아래에 놓이며 자신이 책임을 맡은 부분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또는 사고를 어떤 처리 수단으로든 (전화, 신호, 배달 그 밖에)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1.15.3 플래그 마샬은 특별히 깃발 신호를 맡는다(국제스포츠규정 부칙 H 참조). 이들은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을 겸할 수 있다.

11.15.4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자신이 기록한 사건 또는 사고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16조 사실 판정관의 임무

11.16.1 스타터 오피셜

11.16.1.a 레이스의 조직위원회에서 레이스 출발 감시를 위해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판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

11.16.1.b 스타터 오피셜은 어떤 부정 출발이든 일어난 것으로 보이면 경기위원장에게 즉시 알린다.

11.16.2 피니쉬 오피셜

차량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피니쉬 오피셜이 임명되어야 한다.

경기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간(기록)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사람이 기록위원장이 된다.

11.16.3 기타 판정관

특정한 선에 닿거나 이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른, 또는 경기의 특별규정 또는 무엇이든 적용되는 규정에서 정한 그 밖에 사실에 따른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결정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에 대한 책임을 맡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실 판정관을 주최자가 제안하고 심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11.16.4 보조 판정관

위 판정관 각각은 이들을 지원하거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임명된 보조 판정관을 둘 수 있으나, 이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실 판정관 자신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11.16.5 오심

판정관이 자신이 오심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나, 심사위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정한다.

11.16.6 판정되어야 할 사실

경기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사실 판정관이 판정해야 할 사실을 지정해야 한다.

11.16.7 사실 판정관의 이름이 공식 게시판 또는 디지털 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12조 반칙 또는 위반 및 처벌

제12.1조 일반 조항

12.1.1 책임

12.1.1.a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는 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반칙 또는 위반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다.

12.1.1.b 반칙 또는 위반을 저지르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12.1.1.c 선동자 또는 공범자도 반칙 또는 위반에 가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1.2 기소 제한 시간

- 12.1.2.a 침해 기소에 대한 법적 한도는 5년이다.
- 12.1.2.b 시효 실행:
 - 반칙 또는 위반을 저지른 날로부터.
 - 마지막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연속 또는 반복된 반칙 또는 위반의 경우.
 - 반칙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중지된 날로부터.
- 12.1.2.c 그러나, 범죄 또는 침해가 심사위원이나 FIA의 기소 기관으로부터 은폐된 모든 경우에, 시효는 범죄 또는 침해의 사실이 심사위원 또는 FIA의 기소 기관에 알려진 날부터 시행된다.
- 12.1.2.d 시효는 FIA 사법 및 징계 규칙 제1장에 따라 수행되는 기소 또는 조사에 의해 중단된다.

제12.2조 규정 위반

- 12.2.1 이전 또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모든 벌칙 이외에, 다음에 언급되는 사항은 이 규칙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 12.2.1.a 경기에 관한 오피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또는 경기에 어떤 식으로든 고용된 모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려는 모든 시도, 또는 이들 오피셜이나 피고용인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12.2.1.b 어떤 경기에 참가 자격이 없는 자동차가 참가 또는 참가 신청을 하려는 모든 행위.
 - 12.2.1.c 어느 경기 참가자든 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모터스포츠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정 행위 또는 행동.
 - 12.2.1.d FIA, ASN의 목적에 반하거나 어긋나는 모든 시도.
 - 12.2.1.e FIA, ASN 결정에 대한 모든 거부 또는 불이행.
 - 12.2.1.f FIA의 조직, 구성원 또는 임원에게 도덕적 상해 또는 손실을 초래한 모든 언행, 행위 또는 저작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터스포츠의 이익과 FIA의 가치를 해치는 것.
 - 12.2.1.g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
 - 12.2.1.h 무엇이든 안전하지 않은 행동 또는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벌어진 모

든 안전하지 않은 상황.

- 12.2.1.i 안전 그리고 경기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한 관련 오피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 12.2.1.j FIA 서킷 주행 규칙(국제스포츠규정 부칙 1)을 따르지 않는 행위.
- 12.2.1.k 모든 위법행위.
- 12.2.1.l 경기에서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 스포츠맨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스포츠윤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 12.2.1.m 폭력이나 증오에 대한 공개적인 선동.
- 12.2.1.n 국제 대회를 위해 FIA에 의해 사전 승인되거나 국내 대회의 경우 해당 ASN에서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FIA의 규정에 따라 장려되는 중립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는 정치적, 종교적 및 개인적인 성명 또는 의견을 일반적으로 제작하고 표시하는 것.
- 12.2.1.o FIA 챔피언십에 포함되는 모든 경기에서의 공식 세레모니 동안 FIA 지명자와 참여 인사에 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12.2.1.p FIA가 서면으로 승인없이 참가자 및 관중이 FIA 대회에서 화약 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2.3조 벌칙

- 12.3.1 FIA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또는 국내규정 또는 특별 규칙에 대하여 주최자, 오피셜, 경기 참가자, 선수, 참가자, 다른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이 무엇이든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벌칙 처분을 받는다.
- 12.3.2 벌칙 또는 벌금은 다음 조항에서 정한 대로 심사위원회나 ASN이 부과한다.
- 12.3.3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조항에 따라 즉시 구속력이 있다.
 - 12.3.3.a 만약 아래의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항소하는 경우, 그리고 항소 의사가 해당 마감일 이후에 제출될 경우, 특히 이후 경기 참가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핸드캡 규칙이든 그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 페널티가 유예되어야 한다. 항소에 따른 유예 결정은 그 경기 참가자와 선수가 시상식 또는 포디엄 행사

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경기 종료 시에 최종 순위에서도 벌칙을 적용한 결과를 얻게 되는 순위가 아닌 다른 순위로 표시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항소재판소에 제출된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시간 경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권한은 회복된다.

12.3.3.b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아래 제12.3.4조에 따른 항소 대상이 아닌 결정에 관한 경우 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경우 항소시에도 즉시 구속력을 갖는다.

- 자격 정지 효과가 차량 안전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안,
- 부칙 C를 위반할 경우,
- 부칙 S를 위반할 경우,
- 제12.2.1.b, 12.2.1.c, 12.2.1.e 그리고 12.2.1.h조의 위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규정 위반
- 경기 참가자의 불규칙한 참가에 대한 질의
- 자동차 광고와 관련된 질의 (위 제10.6조), 또는
- 동일한 경기 기간 중에 추가 위반을 저지르면 해당 참가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12.3.3.c 페널티 유예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12.3.3.a와 12.3.3.b)은 국내항소법원이나 국제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12.3.4 특정(아래) 경우의 결정들은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스톱 앤 고 페널티, 그리고 각 스포츠규정에 명시되어 적용 가능한 다른 페널티를 부과하는 결정에 대한 것들도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다.

12.3.5 이 조항, 그리고 이후 조항들과 관계 없이, FIA의 감찰기구는 FIA 옵서버의 제안과 보고, FIA가 선임한 이벤트의 국제 심사위원 두 명의 공동 보고서, 또는 FIA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른 자체 발의로, 앞서 언급한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든 이벤트의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벌칙을 대신해서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 문제를 국제재판소(11.6.9.a와 11.9.6.b 내용 제외)에 회부할 수 있다.

12.3.5.a 국제재판소 회부에 따르는 과정은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설명되어 있다.

12.3.5.b 국제재판소가 제재 조치를 결정하면 이에 대한 항소를 국제 항소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된 ASN은 관련 당사자를 대신한 항소 제기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4조 벌칙의 범위

12.4.1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12.4.1.a 경고

12.4.1.b 견책

12.4.1.c 벌금

12.4.1.d 공익 업무 수행 의무

12.4.1.e 선수의 결승, 예선 및 연습 랩 타임의 불인정 또는 삭제

12.4.1.f 그리드 강등

12.4.1.g 선수에게 레이스를 피트 레인에서 출발하도록 강제

12.4.1.h 타임 페널티

12.4.1.i 페널티 랩

12.4.1.j 경기 참가자의 순위 강등

12.4.1.k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12.4.1.l 스톱 앤 고 그리고 스톱 앤 고와 미리 정해진 스톱 시간

12.4.1.m 실격

12.4.1.n 자격 정지

12.4.1.o 제외 (심사위원회에 의해 가해져서는 안 됨)

12.4.1.p 제명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할 수 있음)

12.4.2 시간 벌칙은 분 그리고/또는 초로 표현되는 벌칙을 뜻한다.

12.4.3 벌칙은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즌의 후속 경기에 적용될 수 있다.

- 12.4.4 증거를 검토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 벌칙 가운데 한 가지만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할 경우에는 변론 기회를 주기 위해 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
- 12.4.5 모든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시리즈에서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1개 또는 그 이상의 경기에 대한 자격 정지, 그리고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시리즈의 포인트 몰수.
- 12.4.5a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수와 경기 참가 팀의 포인트를 별개로 몰수할 수는 없다.
- 12.4.6 위의 제12.4.1조와 제12.4.5조에 언급된 벌칙은 집행이 누적 또는 유예될 수 있다.
- 12.4.7 국제재판소는 또한 FIA 또는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직하는, 또는 FIA의 규정과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기, 이벤트, 또는 챔피언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금지시킬 수 있다.

제12.5조 벌금

- 12.5.1 어떤 규정이든 또는 경기 오피셜의 어떤 지시든 이를 거부하는 경기 참가자는 물론 선수, 관련자, 탑승자 또는 주최자(12.2.1항에 언급된)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2.5.2 벌금 부과는 ASN 또는 경기 심사위원회에서 명령할 수 있다.
- 12.5.3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벌금을 부과했다면 해마다 FIA에서 정하는 특정한 액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12.6조 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아래 대회를 제외하고 250,000€(이십오만 유로)다.
- FIA 포물라 원 챔피언십 : 1,000,000€ (일백만 유로)
 - FIA 세계 챔피언십 (포물라 원 제외) : 750,000€ (칠십오만 유로)
 -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FIA 세계 챔피언십 제외) : 500,000€ (오십만 유로)

제12.7조 벌금 납부에 대한 책임

경기 참가 팀은 그의 소속 선수, 스태프, 탑승자,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2.8조 벌금 납부 기한

- 12.8.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 안에 전자 결제 수단을 포함한 어떤 지불 방식으로든 납부해야 한다.
- 12.8.2 벌금 납부를 지연하면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자격 정지 처분이 따른다.
- 12.8.3 경기에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되어야 한다.

경기 동안 발생된 벌금	납부처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 경기	FIA
국제 시리즈 경기	국제 시리즈의 모국(Parent) ASN
여러 나라의 영토에서 개최되는 경기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등재된 ASN
지역 챔피언십 경기	지역 경기를 조직한 ASN
자국 챔피언십 경기	자국 챔피언십을 조직한 ASN
자국 경기	자국 챔피언십을 조직한 ASN

제12.9조 실격

- 12.9.1 심사위원회는 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12.9.2 경기 전체에 대한 실격 처분을 받으면 참가비는 몰수되어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제12.10조 자격 정지

- 12.10.1 국제스포츠규정과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른 처분에 더해서 ASN은 자격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한정한다.

12.10.2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 이 처분이 국내인지 국제인지에 따라서 ASN의 관할 영토 또는 FIA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개최되는 어떤 경기에서든, 어떤 지위로도 참가할 권리를 잃게 된다.

12.10.3 자격 정지 처분은 또한 그 정지 기간 동안 열리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든 이전에 얻은 참가 자격을 무효로 만들며 이러한 참가 신청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몰수된다.

제12.11조 잠정 자격 정지

12.11.1 FIA가 후원하여 주최하는 경기에서 참가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 질서 또는 모터스포츠의 이익을 이유로, 국제 재판소는 FIA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FIA가 조직한 레이스, 경기, 또는 다른 이벤트의 틀 안에서 특히 FIA가 발급한 공인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12.11.2 모든 잠정 정지 처분은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서 내려져야 한다.

12.11.3 공인, 라이선스, 승인을 잠정적으로 정지당한 사람은 이러한 정지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제12.12조 라이선스의 취소

12.12.1 국내 자격 정지

12.12.1.a 국내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는 ASN에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며, ASN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압인을 찍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국가명)에서는 유효하지 않음.”

12.12.1.b 자격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압인이 찍힌 라이선스는 새 라이선스로 교환 된다.

12.12.2 국제 자격 정지

국제적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ASN에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며 정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돌려주지 않는다.

12.12.3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ASN에 대한 라이선스 반납이 지체되는 기간만큼 정지기간에 추가된다.

제12.13조 자격 정지의 효력

12.13.1 ASN이 내린 자격 정지 처분은 그 ASN의 영토 안에서만 적용된다.

12.13.2 그러나 ASN에서 해당 라이선스 보유자(참가자, 선수, 오피셜, 주최자 등)의 명백한 규정 위반에 의한 자격 정지 처분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할 경우, 바로 그 뜻을 FIA 사무국에 1) 자격정지 결정에 공신력 있는 문서 사본(FIA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2) 제재를 받은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는 증거와 3) 관련 ASN이 반영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이 모든 정보를 받은 후 FIA는 모든 ASN에 이사실을 통보한다. 자격 정지 처분은 각 ASN이 곧바로 인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규제가 효력을 발휘한다.

12.13.3 ASN에게 인정을 받은 이러한 자격 정지는 www.fia.com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제12.14조 제외

12.14.1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 처분은 ASN에서 내릴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심각한 위반에 한정한다.

12.14.2 제외는 언제나 국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모든 ASN에게 통보되며 국제 자격 정지 조건에 따라서 등록된다.

제12.15조 국제 스포츠 기구에 대한 벌칙 통보

12.15.1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자격 정지와 제외는 FIA가 부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합의한, FIA가 지정한 국제 스포츠 기구들에게 통보된다.

12.15.2 이들 기구로부터 FIA에 통보된 모든 자격 정지와 제외 처분은 FIA에서 그와 같은 범위로 시행한다.

제12.16조 자격 정지 또는 제외 이유 언급

ASN은 자격 정지 또는 제외의 대상자에게, 또 FIA 사무국에 이 사실에 대해 통보 할 때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를 꼭 알려야 한다.

제12.17조 자동차의 자격 정지 또는 제외

특정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모델에 대한 자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2.18조 포상의 상실

경기 도중 실격, 자격 정지, 또는 제외를 당한 경기 참가자는 해당 경기에서 수여되는 어떤 상도 받을 자격을 잃는다.

제12.19조 순위와 포상의 수정

경기 참가자의 경기 기간 동안에 실격 또는 자격 정지가 된 경우,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로 수정되는 순위와 포상을 발표하며, 다음 순위 경기 참가자의 순위를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2.20조 벌칙의 발표

12.20.1 FIA 또는 ASN은 사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모델에게 벌칙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공고문을 만들거나 발표할 권리가 있다.

12.20.2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은 FIA, ASN 또는 해당 공고문을 발표한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제12.21조 처분의 감면

ASN은 스스로 결정한 조건에 따라서 아직 만료되지 않은 제외 기간을 감면하거나 자격 정지를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 단, 원래의 벌칙을 ASN이 부과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 항의

제13.1조 항의를 할 권리

13.1.1 항의를 할 권리는 경기 참가자에게만 있다.

13.1.2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항의를 할 수 없다.

13.1.3 하나가 넘는 동료 경기 참가자들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 참가자는 관련 행위에 연루된 경기 참가자들의 수만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3.2조 항의의 대상

13.2.1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 코스의 길이
- 핸디캡
-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 경기 중 발생하는 오류 또는 부정, 또는 규정 위반
- 차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심되는 사항
- 경기 종료 후 잠정 순위

제13.3조 항의 시간 제한

항의	시간 제한
13.3.1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차량 사전 검차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 전까지
13.3.2 코스의 길이	
13.3.3 핸디캡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또는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정의된 규정 적용
13.3.4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스포츠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히트 또는 결승 구성 발표 후 30분 전까지
13.3.5 경기 중 발생하는 의심되는 오류나 부정, 경기 규정 위반	다음을 제외하고 잠정 순위 발표 후 30분 이내 - 심사위원회가 30분 이내 항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3.3.6 차량 규정 위반에 대한 의심되는 항의	- 게시판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발생시(제11.9.4항) 또는 - 적용되는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13.3.7 경기 종료 후 확정된 결과	

제13.4조 항의의 제출

13.4.1 항의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관련 규정들
- 항의 당사자의 관련 내용
- 항의 대상과 발생 시간, 장소

여러 참가자들과 관계된 경우, 각 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드라이버가 여러 차량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2 각 항의는 보증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보증금 액수는 그 나라의 ASN에서 매년 결정한다.

- 국제 시리즈를 주최하는 ASN
- ASN이 국내 챔피언십을 주최하고 국제스포츠규정 제2.4.4.c조 또는 제 2.4.4.e조에 따라 경기를 조직
- FIA에 의한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그리고, 경기 스포츠 규정 또는 보충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보증금은 항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만 반환된다.

13.4.3 차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차량 부적합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차량의 부품 해체와 재조립을 요구하는 항의의 경우, FIA 기술 대표(임명된 경우) 또는 기술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추가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추가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통지한 후 1시간 이내로 항의자가 지불해야 한다(또는 그들이 동의한 시간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3.4.4 항의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하여야 한다.

항의 제기 동안	납부처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 경기	FIA
국제 시리즈 경기	국제시리즈의 모국 ASN

여러 나라의 영토에서 개최되는 경기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등재된 ASN
지역 챔피언십 경기	지역 경기를 조직한 ASN
국내 챔피언십 경기	자국 ASN
국내 경기	자국 ASN

제13.5조 항의를 제출할 곳

13.5.1 경기에서 발생한 항의는 심사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SN 규정에 의해 경기 사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13.5.2 만약 항의가 있다면 경기위원장 또는 그 보조요원에게 항의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경기위원장 또는 그 보조원이 부재시에는 항의는 심사위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3.5.3 차량 검차가 주최자의 국적과 다른 나라에서 수행될 때에는 그 다른 나라 ASN의 오피셜 중 누구든 항의를 접수 받아 필요하다면 타당한 의견과 함께 최대한 빨리 심사위원회에 전달할 권리가 있다.

13.5.4 항의 접수는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고, 접수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3.6조 심리

13.6.1 항의가 제출되고 나면 항의를 제기한 사람 그리고 항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상대로 한 심리가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한다.

13.6.2 관련 당사자들은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되며, 증인을 동반할 수도 있다.

13.6.3 심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13.6.4 관련 당사자 또는 이들의 증인 가운데 누구든 없을 경우에는 결석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13.6.5 관련 당사자들의 심리 뒤에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 시간과 장소를 통보 해야 한다.

제13.7조 인정되지 않는 항의

- 13.7.1 직무 수행 중인 오피셜이 판정한 사실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13.7.2 이 판정은 심사위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은 최종이지만, 판정 만으로 순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선수가 어떤 조건에서 코스를 완주했는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13.7.3 1명 이상의 경기 참가자를 상대로 한 한번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13.7.4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13.8조 포상과 시상식의 발표

- 13.8.1 항의 제기 대상이 된 경기 참가자가 획득한 포상은 그 항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되어야 한다.
- 13.8.2 더 나아가, 그 결과가 경기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항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주최자는 잠정 순위만을 발표할 수 있으며 모든 포상은 그 항의(항소를 포함하여)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된다.
- 13.8.3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이 수여된다.

제13.9조 판결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를 조건으로, 내려진 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만 심사위원회는 물론 ASN에서도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13.10조 근거 없는 항의

- 13.10.1 항의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 13.10.2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의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 13.10.3 더 나아가,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ASN은 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벌칙 가운데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재심사 권한

- 14.1.1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또는 국제 시리즈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회에서, 당사자가 해당 시점에 재심사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후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판정했던 심사위원이나, 이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FIA는 하단 사람이 요청한 해당 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재조사할 수 있으며

-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및/또는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 또는

- FIA

심사위원들은 서로 합의된 날짜에 만나야 하며(직접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당사자 또는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그전에 제기된 사실과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14.1.2 관련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소환심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14.2 심사위원회 본래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래 결정된 판단에 대한 중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4.3 심사위원회는 관련 있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유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어떠한 정보(구성요소) 존재의 여부는 국내항소재판소 또는 국제항소재판소에 앞서 항소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 14.4.1 재심사에 대한 청원이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은 대회 종료 후 96시간 뒤에 만료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96시간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24시간 까지만 확장 가능하다.
- 14.4.2 더욱이,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내에서는 FIA prize-giving 시상식 일자로부터 최소 4일 전부터는 경기 재심사 요청이 이루어질 수 없다.

14.4.3 재심사 청원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ISC 14.1.1에 따라 결정된 요소를 명시해야 한다. 보증금이 동반되어야 하며 보증금 금액은 매년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국제 시리즈 등록(Parent) ASN
-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FIA

추가적으로 보증금은 스포츠 규정 또는 대회 특별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보증금은 공정성에 대한 다른 요구가 없는 한 재심사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반환된다.

14.5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은 국제스포츠규정 제12.2.4조를 침해 없이, 국제스포츠규정 제15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국한된다.

14.6 최초의 결정이 국내 항소재판소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양쪽 재판소 모두에 이미 제기되었던 항소의 안건이라면,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이들 재판소에 제출되어 이전 결정에 대해 가능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항소

제15.1조 관할권

경기별 구분	담당 항소 재판소
15.1.1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ISC 2.3.7.b, 2.4.4 와 2.4.5)	ASN의 국내 항소 재판소(최종)
15.1.2 여러 나라의 영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기 (ISC 7.1)	국제 스포츠 캘린더 등록을 요청한 ASN의 항소 재판소
15.1.3 존(Zone) 챔피언십	해당 국가 ASN의 항소 재판소
15.1.4 국제 시리즈	국제 시리즈의 모국의 ASN 항소 재판소
15.1.5 FIA 챔피언십,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	국제 항소 재판소(FIA의 규정 및 징계 규칙에 따라)

제15.2조 국제 항소 재판소

국제 항소 재판소(국제항소법원)은 국제스포츠코드(ISC) 15.1.2부터 15.1.4에 따라 이루어진 국내항소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갖는다(FIA 규정 및 징계 규칙).

국제 항소 재판소의 항소 절차 및 다른 운영 규칙은 웹 사이트(www.fia.com)에 게시된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제15.3조 국내 항소 재판소

15.3.1 ASN은 ASN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닌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임명하여 국내 항소 재판소를 구성한다.

15.3.2 국내 항소 재판소의 어떤 구성원도 심리 중인 경기의 경기 참가자, 선수, 또는 오피셜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면, 또는 심의 중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이전의 결정에 참여했거나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다면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제15.4조 국내 항소 재판소에 항소 절차

15.4.1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은 참가자, 주최자, 드라이버 또는 기타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결정이 내려진 ASN의 국가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 해당 국제 시리즈의 등록 ASN에, 또는
- 경기가 제2.4.4.c조 또는 2.4.4.e에 따라 조직된 경우, 국내 챔피언십 경기를 조직한 ASN에

이 조의 목적상, 주최자, 참가자, 드라이버 및 다른 라이선스 소지자는 자신 고유의 특성을 이유로 또는 다른 모든 개인들과 구별되어 차별화된 사실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15.4.2.a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서면으로 심사위원에게 항소할 뜻을 밝히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15.4.2.b 위의 11.9.3.w 또는 14.1에 의거 한 결정의 경우 또는 심사위원이 1시간의 기

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의사에 대한 통지에 다른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이 발표된 후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ASN에 이의 제기가능 기한 및 보증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연기될 수도 있다.

15.4.3 ASN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심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뜻을 밝혀야 하며, 항소 의사는 심사위원회에게 통지한 시각으로부터 96시간 동안 유효하다.

15.4.4 항소는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통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날 발송된 확인이 필요하다.

15.4.5 ASN은 최대 30일 안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5.4.6 모든 당사자들은 항소의 심의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받는다. 이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으나 그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 진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제15.5조 국내 항소 재판소 전의 항소 형식

15.5.1 모든 항소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공인된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5.5.2 항소 보증금은 항소인이 심사위원회에 항소할 뜻을 밝힌 때로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며 항소인이 항소할 뜻을 선언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항소 보증금 액수는 그 나라의 ASN에 의해서 매년 결정된다.

- 국제시리즈의 등록 ASN

- 국제스포츠규정 2.4.4.c 또는 2.4.4.e에 따라 조직된 국내 챔피언십의 ASN

15.5.3 상기 15.4.2.b 규정에 의거하여,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 받은 지 96시간 안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인의 라이선스는 보증금을 낼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15.5.4 항소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소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15.5.5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소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15.5.6 더 나아가,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벌칙 가운데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6조 국내 항소 재판소의 판결

15.6.1 국내 항소 재판소는 항소 대상이 된 벌칙 또는 다른 결정을 면제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벌칙을 경감 또는 가중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다.

15.6.2 국내 항소 재판소의 판결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제15.7조 비용 (수수료 제외)

15.7.1 국내 항소재판소는 제출된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절차와 재판소 회의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지출의 수준을 사무국에서 계산하여 재판소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15.7.2 비용은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지출이나 변호료를 제외하고 이 비용만으로 구성된다.

제15.8조 판결의 발표

15.8.1 FIA 또는 ASN은 항소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고문을 만들고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명시할 권리를 가진다.

15.8.2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은 FIA, ASN 또는 해당 공고문을 발표한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제15.9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규칙 안의 어느 부분도 어떤 당사자든 어떤 법원 혹은 재판소든 법적 조치를 제기할 어떤 권리도 막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언제

나 다른 구제 방법 또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추구하기 전에 우선 받아들인 모든 의무를 다했을 경우로 한정한다.

제15.10조 스포츠 중재 재판소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FIA 반-도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항소를 해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

제15.11조 세계반-도핑 프로그램의 준수

15.11.1 세계 반-도핑규정과 국제표준에 서명인은 의무가 수반(FIA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되고, FIA는 세계 반-도핑 규정 서명인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세계 반-도핑 규정을 다른 서명인에 대한 결과 및/또는 복직 조건을 부과하는 최종 결정을 인지하고 존중하며 전체를 제공되어야 한다(그러한 결과 및 / 또는 복직 조건이 세계 반 도핑기구에 의해 제안되고 해당 서명자가 동의했는지 여부 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부과되었는지 여부).

15.11.2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세계반-도핑 규정의 서명인이 세계반-도핑 규정 서명인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지, 또는 그러한 미준수 결과로 부과되는 복직 조건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15.11.3 FIA 사무국은 세계 반-도핑 규정에 대한 서명자가 미준수한 최종결정(세계 반-도핑 기구 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 발표 여부)에 대하여 모든 ASN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하고, 그러한 미준수로 부과된 결과 /복귀 조건은 FIA 및 모든 사람, 기관, 조직은 FIA 규제권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최종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www.fia.com 에 공지될 것이다.

15.11.4 최종 결정이 적절한 경우 세계 반-도핑 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효력이 시작되며, FIA 및/또는 FIA의 규제 권한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 단체, 조직은 해당 날짜로부터 최종 결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

15.11.5 FIA와 관련한 세계 반-도핑 기구 및 스포츠 중재 법원에서 내린 최종 결정은 FIA 및 해당 ASN에 의해서 동일한 범위로 시행된다. (규정 제1.4조에 따라)

FIA는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에 대한 완전한 효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규정 제12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의 경기 번호와 광고에 관한 규칙

제16.1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번호의 숫자는 흰 바탕색 사각형 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밝은 색깔의 자동차인 경우, 흰 바탕색 사각형의 둘레 전체에 걸쳐 5cm 너비의 검은 테두리가 쳐져 있어야 한다.

제16.2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숫자는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형식이어야 한다 : 1 2 3 4 5 6 7 8 9 0

제16.3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자동차에는 다음 장소에 경기 번호가 붙어 있어야 한다.

16.3.1 자동차 양쪽, 앞쪽 문, 또는 콧과 같은 높이에.

16.3.2 앞에서 읽을 수 있도록 차량의 노즈 또는 보닛에.

16.3.3 1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16.3.3.a 숫자의 최소 높이는 23cm이며 획의 굵기는 4cm.

16.3.3.b 흰 배경색은 적어도 45cm 너비에 33cm 높이.

16.3.4 다른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16.3.4.a 숫자의 최소 높이는 28cm이며 획의 굵기는 5cm.

16.3.4.b 흰 배경색은 적어도 50cm 너비에 38cm 높이.

16.3.5 어느 지점에서든 숫자의 모서리와 흰 배경색의 모서리 사이 거리는 5cm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제16.4조

16.4.1 앞쪽 날개 양편에는 선수(들)의 국기(들) 그리고 선수의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6.4.2 이들 국기와 이름의 최소 높이는 모두 4cm이다.

제16.5조

- 16.5.1 흰 배경색 위아래로, 높이가 12cm이고 너비가 배경색 영역과 같은 영역은 주 최자가 광고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16.5.2 이러한 영역을 확보할 수 없는 자동차(예를 들어서 몇몇 1인승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기 참가자는 흰 배경색 바로 부근에 이와 동등한 영역을 광고 없이 남겨 두어야 한다.
- 16.5.3 ASN이 다르게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체의 남은 부분에 대한 광고는 자유다.

제16.6조 경기 번호 그리고 광고는 차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제16.7조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한, 윈드스크린과 창문에는 광고를 붙일 수 없다. 단, 윈드스크린의 위쪽으로 최대 10cm 높이의 띠 모양 영역, 그리고 선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뒤쪽 창문에 8cm 높이의 띠 모양 영역은 예외다.

제16.8조 히스토리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광고와 경기 번호에 관련된 규정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K에 정의되어 있다.

제17조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상업적 문제

제17.1조 FIA에게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속한 경기의 주최자 또는 주최자의 집단은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업 회사 또는 조직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믿도록 명시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

제17.2조 따라서 상업 회사, 조직 또는 브랜드의 이름을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와 묶을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FIA가 보유한다.

제18조 FIA 결정의 공식화

제18.1조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의 발표

- 18.1.1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와 이를 구성하는 경기의 목록은 해마다 10월 15일보다 늦지 않게 발표된다.
- 18.1.2 발표 뒤에 캘린더에서 취소되는 어떤 경기든 해당 년도의 국제적인 자격을 잃게 된다.

제18.2조 규정의 개정

FIA월드 모터스포츠 카운실은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 규정에 따라서 발표되고 효력을 가지게 된다.

18.2.1 안전

안전을 이유로 FIA가 규정에 대해서 시행한 변경은 통지 또는 지체 없이 효력을 가진다.

18.2.2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국제스포츠규정 기술규정, 부칙 J 또는 부칙 K에 대해서 FIA가 채택한 변경은 해마다 6월 30일 이전에 발표되며 발표된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이는 FIA에서 해당 변경이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그리고/또는 자동차 사이의 성능 균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을 때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 변경은 발표된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보다 빠르지 않은 시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18.2.3 경기규정 그리고 다른 규정

18.2.3.a 위에서 언급한 규정 이외의 모든 규정과 스포츠 규칙의 변경은 늦어도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엔트리 신청일에 발표되어야 한다.

18.2.3.b 이러한 변경은 발표된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 단, 이는 FIA에서 해당 변경이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그리고/또는 자동차 사이의 성능 균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을 때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 변경은 발표된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보다 빠르지 않은 시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18.2.4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짧은 예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엔트리 신청일에 발표되어야 한다.

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정식으로 참가한 모든 경기 참가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FIA가 문제 변경이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적절하게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 동의로 충분하다.

제18.3조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의 발표는 인터넷 사이트 www.fia.com에 게시되는 대로 공식적인 문서가 되며 그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국제스포츠규정의 시행

제19.1조 규정의 국내 해석

각 ASN은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일어났으며 항소의 권리를 ISC 15.1 적용 받아,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그 국내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든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단, 이러한 해석은 FIA가 내놓은 해석 또는 해명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제19.2조 국제스포츠규정의 변경

FIA는 언제든지 “국제스포츠규정”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그 부칙을 개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FIA 총회는 FIA 월드 모터스포츠 카운실의 단독 권한 내에 있는 부칙에 대한 수정을 제외하고 FIA 세계 모터 스포츠 카운실 제안에 대한 규정 수정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제19.3조 통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ASN이 FIA에게 요구하는 모든 연락은 FIA 본부의 주소 또는 별도로 주어진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19.4조 이 규칙의 국제적인 해석

19.4.1 이 규칙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된다. 이 규칙은 다른 언어로 발표될 수 있다.

19.4.2 FIA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서 그 해석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프랑스어 원문만이 공식 원문으로 간주된다.

제19.5조 국제스포츠규정과 관련 법률 간의 상호 작용

19.5.1 본 국제스포츠규정의 어떤 내용도 관련 법률의 적용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

19.5.2 본 국제스포츠규정에는 관련 법률에 대하여 어떤 조언이나 지침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FIA는 본 규정에 포함된 정보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는 선언 또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제20조 정의

다음의 정의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그 부칙, 모든 국내규칙과 그 부록, 그리고 특별규정에 채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쓰여야 한다.

절대 세계 기록(Absolute World Record) : 범주, 등급, 또는 그룹에 관계없이 한 자동차가 공인된 거리 또는 시간 동안 거둔 가장 좋은 성과로서 FIA가 공인한 기록.

부칙(Appendix) : 국제스포츠규정의 부칙

관련 법률(Applicable Laws) : 정부, 준정부 기관 또는 해당 국가나 기타 영토(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정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통과된 초국적, 국내 및/또는 지방 법률, 규정, 지침 및 법령, 건강, 안전, 보험과 관련된 모든 해당 지방, 주 및 연방법, 그리고 전술한 모든 구속력 있는 법원 명령, 법령, 모든 결정 및/또는 전술한 내용에 포함된 업계 관행, 업무 강령 및/또는 행동 강령, 대회에 적용되는 관할 당국의 판결.

ASN(National Sporting Authority) : FIA Statutes 3.3조에 의해 FIA가 승인한 국내 자동차 클럽, 협회 또는 연맹으로 그 나라 안의 유일한 스포츠 권한 보유자이다. 또한, FIA Statutes 3.1조에서 정의된 것처럼 ASN은 ACN(National Automobile Club)을 겸할 수 있다.

자동차(Automobile) : 모두가 한 줄로 늘어서 있지는 않는 적어도 네 개의 바퀴가 지속적으로 지면(또는 얼음)과 접촉해 있으며,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조향에,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추진에 쓰이고, 탑승한 선수가 그 동력과 조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제어하는 운송 수단. (경기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량, 트럭, 카트를 포함한, 그러나 이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다른 용어들을 자동차와 바꿔서 쓸 수 있다)

바하 크로스컨트리 랠리(FIA Cup 제외) (Baja Cross-Country Rally) : 하루 동안 (포함되는 최대 거리 : 600km) 또는 이틀 동안 (포함되는 최대 거리 : 1,000km. 두 레그 사이에 최소 8시간, 최대 20 시간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한다)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랠리. 추가로 하루 동안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가 운영될 수 있다. 선택적인 각 구간의 거리는 300km에서 801km여야 한다.

FIA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참가자의 스태프에 대한 라이선스(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the staff of Competitors entered in the FIA World Championship) : FIA 월드 챔피언십의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 구성원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FIA로부터 발급받는 등록증.

챔피언십(Championship) : 챔피언십은 여러 경기 또는 단일 경기일 수 있다.

서킷(Circuit) : 고유한 설비를 포함하며,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며, 특별히 자동차 레이스를 위해 건설되거나 개조된 폐곡선 코스. 서킷은 설비의 특성 그리고 경기를 위한 이용 편의성에 따라서 임시, 준상설, 또는 상설일 수 있다.

서킷 레이스(Circuit Race) : 폐곡선형 서킷에서 열리고 두 대 또는 그보다 많은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같은 코스에서 동시에 달리며, 속도 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달린 거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기.

등급 분류(Classification) : 엔진 실린더 용량 또는 무엇이든 다른 구분 방법에 따라서 차량을 그룹으로 묶는 것. (FIA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와 J 참조)

클로즈드 경기(Closed Competition) : 국내경기가 ASN이 발급한 라이선스(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를 가진 한 클럽의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로즈드 경기라고 부를 수 있다. 클로즈드 경기는 ASN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여러 클럽이 개최하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규정(Code) :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경기(Competition) : 자체적으로 결과를 내는 단일 모터스포츠 활동. 경기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그리고 결승전, 자유 연습 주행, 예선 연습 주행 그리고 여러 범주의 결과로 구성되거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 **스피드 경기(Speed Competition)** : 다음은 스피드 경기로 간주한다 : 서킷 레이스, 랠리, 크로스 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도전,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트, 슬라럼과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

• **제한-스피드 경기(Limited-Speed Competition)** : 평균 속도가 최대 50km/h 이고/또는 정상적인 교통이 가능한 공공 도로에서 진행되는 경기. 다음은 제한-스피드 경기로 간주한다. : 레귤라리티(Regularity), 에코-레귤라리티(eco-regularity), 에코-경기(eco-competition), 히스토리컬 레귤라리티(historic regularity), 데모 주행, 퍼레이드, 투어링 어셈블리 그리고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

경기 참가팀/경기 참가자(Competitor) :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기든 그 참가가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 또는 단체로 소속 ASN이 발급한 경기 참가자/선수 라이선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컨트롤 라인(Control Line) : 이곳을 지나는 순간 자동차의 시간이 측정되는 선.

코스(Course) : 경기 참가자가 따르게 되는 경로

크로스컨트리 랠리(FIA World Championship 제외) (Cross-Country Rally) : 전체 거리가 1,200에서 3,000km 사이인 경기. 선택적인 각 구간의 거리는 500km를 넘을 수 없다.

실린더 용량(Cylinder capacity) : 피스톤이 위 또는 아래로 움직임에 따라서 실린더(또는 실린더들) 안에 만들어지는 부피. 이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로 표기되며 실린더 용량이 관한 모든 계산에서 원주율 Pi는 3.1416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데모 주행(Demonstration) :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자동차가 성능을 선보이는 것.

실격(Disqualification) : 실격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계속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격은 대회의 일부(예: 히트, 파이널, 자유 연습, 예선 연습 세션, 레이스 등) 전체 대회 또는 동일한 이벤트 내의 여러 대회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재

량에 따라 선언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회 또는 대회의 일부 후에 선언될 수 있다. 실격된 사람의 해당 결과나 시간들은 무효 처리된다.

드래그 레이싱(Drag race) : 적어도 두 대의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하나의 직선 구간에서 출발선에서부터 레이싱을 벌이고, 정확하게 측정된 코스에서 결승선을 먼저 (별칭 없이) 통과한 자동차가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가속 시합.

드리프트(Drifting) : 미리 정해진 코스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선수들이 경쟁하는 대회이다.

심판은 라인, 각도, 스타일 및 속도를 조합하여 채점한다.

드리프트는 영구 또는 임시 폐쇄 코스에서 할 수 있으며, 두가지 형태의 경기가 허용된다.

- 솔로 드리프트는 예선에 자주 사용되며 선수가 한 번에 한 명씩 최대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탠덤/배틀 드리프트는 최소 2회에 걸쳐 동시에 두 명의 선수가 경쟁한다.

각 선수가 1회 주행에서는 선행 차량이 되고 다른 1회의 주행에서는 후행 차량이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선행 드라이버의 목표는 완벽한 예선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후행 드라이버의 목표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선행 차량의 주행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심판은 두 주행의 결과를 비교하여 각 탠덤/배틀의 승자를 결정한다.

선수(Driver) :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기에서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소속 ASN이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가 신청(Entry) : 참가 신청은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EU의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자/팀(EU Professional Competitor) : 어떤 EU 회원국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든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자/팀.

여기에서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자/팀이란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급여 또는 스폰서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라이선스를 발급

한 ASN이 이러한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 형식의 증거물을 제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획득은 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이익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직업적인 상태를 FIA가 만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EU의 프로페셔널 경기 선수(EU Professional Driver) : 어떤 EU 회원국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든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프로페셔널 선수.

여기에서 직업적 선수란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급여 또는 스폰서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이 이러한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 형식의 증거물을 제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획득은 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이익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직업적인 상태를 FIA가 만족한 개인을 뜻한다.

대회(Event)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기, 퍼레이드, 데모 주행 또는 투어링 어셈블리로 구성된 경기.

제외(Exclusion) :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어떤 경기든 모두 참가를 완전히 금지당하는 경우.

제외된 사람은 이전 엔트리가 무효 처리되고 엔트리 비용은 몰수 된다. 제외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계속해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FIA : 국제자동차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FIA 포뮬러 원 재정 규정(FIA Formula One Financial Regulations) :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에만 적용되는 재정(financial) 규정으로 수시로 개정된다.

최종 순위(Final Classification) : 심사위원회가 서명되고 기술위원회 그리고/또는 모든 심사위원들의 결정이 완료되면 게시된 결과(대회 항소 또는 추후 기술 점검의 경우 통고가 추가될 수 있음)

결승선(Finish Line) : 시간 측정 여부에 관계없이 마지막 컨트롤 라인.

불가항력(Force Majeure) :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외부 요인으로 일어난 사건.

핸디캡(Handicap) : 경기 참가자의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로 경기의 특별규정에서 정한 방법.

힐 클라임(Hill Climb) : 자동차가 따로따로 출발하며 결승선이 보통 출발선보다 고도가 더 높은 곳에서 끝나는 같은 코스를 달리는 경기.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의 거리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이 순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국제 챔피언십(International Championship) :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가한 다른 주체가 조직하는 국제경기로만 구성된 챔피언십.

국제경기(International Competition) : 국제스포츠규정과 부칙 안에서 FIA가 결정한 요건에 따른 국제적인 안전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

국제 라이선스(International Licence) : FIA를 대리하여 ASN이 발급한 라이선스이며 그 라이선스의 수준에 적절한 국제경기에 대해서 유효하다. 단, 이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랩 최고 기록(Lap Record) : 레이스 중 단일 랩에서 달성한 가장 빠른 시간.

라이선스(Licence) : 어느 지위든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관할하는 경기에 참가 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선수, 경기 참가자, 제조자, 팀, 오피셜, 주최자, 서킷, 그 밖에)에게 발급되는 등록증.

라이선스 보유자의 등록 명부(Licence-Holders' Register) : ASN이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라이선스를 발급한 사람들의 목록으로 해당 ASN이 보유한다.

라이선스 번호(Licence Number) : ASN의 등록 명부에 오른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에게 해마다 지정하는 번호.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해당 FIA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Marathon Cross-Country Rally) :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는 전체 거리가 적어도 5,000km인 크로스컨트리 랠리이다. 선택적인 선택구간의 전체 길이는 적어도 3,000km는 되어야 한다.

마일과 킬로미터(Mile and Kilometre) : 마일법을 미터법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항상 1마일을 1.609344 킬로미터로 환산한다.

위법 행위(Misconduct) : 특별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모욕, 특히 공격적인 제스처, 몸짓 또는 언어(서면 또는 구두)사용,
- 폭행(팔꿈치로 밀치기, 발차기, 주먹질, 몸싸움 등).

국내 챔피언십(National Championship) : ASN 또는 ASN이 서면으로 인가한 다른 주체가 조직하는 챔피언십.

국내 경기(National Competition) : 국제경기의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모터스포츠 활동.

국내 기록(National Record) : ASN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관할 영토 또는 다른 ASN의 관할 영토에서(이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수립되거나 경신한 기록. 국내 기록은 도전할 자격이 있는 자동차의 형식을 세분화한 등급 가운데 하나에 대해 나온 최고 결과일 경우에는 기록 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기록일 경우에는 절대 기록이 된다.

공식 프로그램(Official Programme) : 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의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의무적인 공식 문서.

주최자(Organiser) : ASN, 자동차 클럽 또는 다른 자격 있는 스포츠 단체.

조직위원회(Oragnising Committee) : ASN에게 승인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가 투자하고,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특별 규정을 집행하는 단체.

공인 허가증(Organising Permit) :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허가하는 문서로 ASN이 발급한다.

세계 절대 육상 속도 기록(Outright World Record) : 자동차의 등급 범주 또는 그룹에 관계없이 하나의 차량이 거둔 최고의 플라잉 스타트 킬로미터 또는 마일의 결과.

퍼레이드(Parade) : 적절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집단을 보여주는 것.

파크 페미(Parc Fermé) : 경기 참가자가 그의 자동차를 가져와야 하는 장소로 적용되는 규정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

소속 ASN (Parent ASN - 라이선스 발급자 관련) : 라이선스 보유자의 국적 (여권 발행 국가)에 해당하는 ASN. 국제스포츠규정 안에 정의된 유럽 프로페셔널 선수인 경우, 소속 ASN은 라이선스 보유자가 실제로 영주하고 있는 EU 국가의 ASN일 수 있다.

등록 ASN(Parent ASN) (Parent ASN - 시리즈 경기 관련) : 시리즈 경기의 승인을 요청한 ASN으로 해당 ASN의 국내 규정에서 해당내용을 언급한 경우에는 국내 규정 승인 및 적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참가자(Participant) : 보호 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동승자(Passenger) : 선수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탄 사람으로 장비를 포함한 몸무게가 60kg보다 가볍지 않아야 한다.

잠정 순위(Provisional Classification) : 해당 세션 또는 대회 종료 후 게시된 결과. 이 순위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화약 제품(Pyrotechnics Product) : 발열, 발광, 소리, 가스, 연기 효과 또는 이러한 효과의 조합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발열 물질 또는 물질의 발열 혼합물을 포함하는 모든 장치 (단, 조명탄, 연막탄 및 불꽃놀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랠리(Rally) :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열리는, 평균 속도를 부과하는 도로 경기. 하나의 랠리는 모든 차량이 따라야 하는 단일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같은 랠리포인트에 모이는 여러 개의 일정,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 일정이 있거나 없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경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페셜 스테이지, 곧 일반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최되는 이벤트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랠리의 총 순위를 결정하는 구간을 하나 또는 여러 개 둘 수 있다. 스페셜 스테이지로 쓰이지 않는 일정은 로드 섹션이라고 부른다. 이들 로드 섹션은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를 부분 활용하는 경기지만 상설, 또는 준상설 서킷에서 진행되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랠리의 전체 거리 가운데 20% 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드 경기로 보아야 한다.

최고 기록(지상 최고 스피드 기록 포함) (Record) :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에서 얻은 가장 좋은 결과.

기록 도전(Record Attempt) :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국내 기록, 세계 기록, 세계 절대 기록, 세계 절대 육상 속도 기록을 깨기 위한 도전.

슬라롬(짐카나, 모토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 (Slalom) :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가

미리 설정된 장애물을 통과하고 달성한 능력과 시간이 결정 요인이 되는 폐쇄 코스에서 개최되는 대회.

보호 지역(Reserved Areas) : 경기가 열리는 지역. 다음을 포함하지만 다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트랙(코스)
- 서킷
- 패독
- 파크 퍼미
- 서비스 파크 또는 존
- 홀딩 파크
- 서킷인 경우에는 피트
- 대중에게 금지된 구역
- 통제 구역
- 미디어 전용 구역
- 급유 구역

특별 자동차(Special Automobiles) : 적어도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나 바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운송 수단.

스피드웨이(Speedway) : 코너가 4개보다 많지 않은 상설 서킷으로 모든 턴은 같은 방향이다.

출발(Start) : 출발은 하나의 경기 참가자에게 또는 동시에 출발하는 여러 경기 참가자에게 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순간이다.

출발선(Start Line) : 시간이 계측되거나 계측되지 않는 첫 번째 컨트롤 라인이다.

슈퍼 라이선스(Super Licence) : 국제 슈퍼라이선스는 FIA가 작성하고 이를 신청한 후보들에게 발급한다. 단, 이들이 이미 부칙 I에 따른 국내 라이선스 보유자임을 조건으로 하며 특정한 FIA 국제챔피언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일련의 규칙에서 정한 조건이 의무다.

특별규정(Supplementary Regulation) : 경기의 자세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스

포츠 경기의 조직위원회가 발표하는 공식문서.

자격 정지(Suspension) : 자격 정지는 특정 기간 동안 자격 정지 대상자가 (i) FIA 또는 ASN(또는 해당 기관의 권한에 속한)이 조직하거나 공인한 경기와 (ii) FIA 또는 ASN(또는 해당 기관의 권한에 속한) 조직하거나 공인한 또는 해당 기관의 회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조직한 사전 테스트 및 교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하는 권리를 박탈한다.

테스트(Test) :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 내에 각 경기 참가자가 선택해서 주행할 수 있는 공식 시간을 말한다.

투어링 어셈블리(Touring Assembly) : 사전에 결정된 한 지점에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조직되는 모터스포츠 활동.

트라이얼(Trial) : 여러 건의 거리 또는 기량 테스트로 구성된 경기.

세계 기록(World Record) : 특정한 등급 또는 그룹으로부터 거둔 가장 좋은 성과. 자동차, 그리고 특별 차량에 대한 세계 기록이 있다.

제21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